세종 제일풍경채 위너스카이 (행정중심복합도시 2-4생활권 HC2블록) 입주자 모집공고 나릿재마을 3단지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18.03.27.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8.04.09.입니다.(무주택기간, 나이, 지역 우선 등의 청약자격 조건 판단기준일임)
-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이하 "해당 주택건설지역"이라한다)은 「주택법」제63조제1항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및 「소득세법」제104조의2에 따른 투기지구입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지역제한 없이 신청가능하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4조제1항, 동조동항 제1의2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 제2016-13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고 제2016-62호에 따라 공급세대수의 50%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세종특별자치시에 계속 거주한 자(2017.04.09.이전부터 계속 거주한 자)가 우선합니다.
- 본 아파트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예정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7조제1항에 규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종사자 등'에게 일정 물량을 우선공급하며, 신청접수 미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되니, 반드시 확정된 물량을 확인하시어 청약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종사자 등 특별공급'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신설) 대상 부서의 공무원 및 국책연구기관의 종사자 등이 신청할 수 있으며, 이전(신설)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부서 및 연구기관의 종사자가 신청한 경우 불이익(당첨시 계약불가 등)을 받게 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법」제57조제1항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민영주택 및 「주택법」제63조제1항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이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에 따라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점수로 계산하여 분양주택의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가점제도」가 적용됩니다.(주택형 85㎡이하 주택은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주택형 85㎡초과 주택은 일반공급 세대수의 50%를 가점제로, 나머지 50%를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신청자 미달시에는 추첨제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선정)
  ※ 본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 1순위 접수시 무주택자(세대주)는 가점제,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세대주)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함.(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분류됨)
- 동일순위 내에서 경쟁이 발생할 경우 세종특별자치시(1년 이상 거주자)청약자 중 낙첨자는 기타지역(세종특별자치시 1년 미만 거주자 포함)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또한 1순위 세종특별자치시(1년 이상 거주자) 신청접수 결과 미달세대는 기타지역(세종특별자치시 1년미만 거주자 포함)에게 공급하고, 기타지역 거주자 신청접수 결과 미달시에는 잔여물량을 각각 상기 거주지역별 배분비율을 적용ㆍ배분하여 차순위에게 공급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100퍼센트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sejong-jeil.co.kr)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제2항에 따라 주택형별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가점제를 적용하여 선정하며,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하고 남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ㆍ호수를 공개한 후 동ㆍ호수를 배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은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하여 둘 다 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됨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0조에 따라 입주자선정 및 동ㆍ호수 배정은 금융결제원에서 실시합니다.(단,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업무는 사업주체가 담당하며, 동ㆍ호수 배정 추첨은 금융결제원에서 실시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4항에 따라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나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일정기간 거주요건(예: 세종특별자치시 1년 이상 거주)이 설정된 경우에는 기타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결제원(www.apt2you.com) 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청약신청 안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오니, 아래 사항을 참조하시어 청약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 1순위 자격 제한(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포함) :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전지역 해당),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년 미만인 자는 1순위 청약 불가합니다.(2순위로 청약 가능)
  - 재당첨 제한(특별공급 및 2순위 포함) : 청약과열지역에서 당첨되는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주택에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는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 주택별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 민영주택인 경우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재당첨 제한기간 : 과밀억제권역 85㎡이하 – 당첨일로부터 5년, 85㎡초과 – 당첨일로부터 3년 / 과밀억제권역외 지역 85㎡이하 – 당첨일로부터 3년, 85㎡초과 – 당첨일로부터 1년
    ※ 청약과열지역 : 서울시ㆍ경기도과천시ㆍ성남시ㆍ광명시 – 전역 / 하남시ㆍ고양시ㆍ남양주시ㆍ화성시ㆍ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ㆍ부산기장군(민간택지는 제외됨) – 공공택지 / 부산시 해운대구ㆍ연제구ㆍ동래구ㆍ남구ㆍ수영구ㆍ부산진구 – 전역
    ※ 투기과열지구 : 서울시ㆍ경기도 과천시ㆍ성남시 분당구ㆍ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ㆍ대구시 수성구
    ※ 과거 당첨사실 조회 방법 :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따라 금융결제원 주택 청약서비스(www.apt2you.com) 또는 KB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신청자, 배우자 및 세대원 각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별도로 각각 검색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세대주 자격을 갖춘 청약자와 배우자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가 각각 청약하여 당첨되는 경우 모두 재당첨제한 규정에 따라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제6항제2호에 따라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제한자로 관리되오니,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가점제 제한사항 : 가점제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년간 가점제 적용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에 당첨된 후 부적격 판정된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제5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따로 공급방법을 정하여 공급하는 분양주택의 공급대상에서 배제됩니다.
- 분양권 전매 및 재당첨 제한기간
  -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은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청약과열지역이며, 본 아파트는 「주택법」제57조제1항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주택법」제64조 및 「주택법시행령」제73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가 금지(이전기관종사자 등에게 특별공급한 주택 포함)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에 따라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기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라 기당첨자 본인은 물론 기당첨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에 한함.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은 본 아파트의 85㎡이하 당첨자인 경우 당첨일로부터 향후 3년 동안, 85㎡초과 당첨자인 경우 당첨일로부터 향후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 민영주택인 경우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해당]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1조 규정에 따라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 배정될 수 있습니다.)
- 투기 적발자 처벌 (「주택법」제101조) 및 공급질서 교란 금지(「주택법」제65조) 관련
  - 분양권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중개자는 「공인중개사법」제36조, 제38조, 제39조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기관에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사업주체와 공동으로 하여야 하며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신고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거래신고에 따른 필요한 제반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내용 외 자세한 사항은 2018.03.27.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Ⅰ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0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주택과 – 1103호(2018.04.06)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행정중심복합도시 2-4생활권 HC2블록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일원)
- 공급규모 및 내역 : 지하2층~지상37층, 9개동 77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주차대수: 아파트 1,310대, 근린생활시설 198대
  [이전기관종사자 등 특별공급 387세대, 기관추천 특별공급 37세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62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37세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24세대 포함]

■ 공급대상 (단위 : ㎡, 세대)

구분	주택관리번호(주택형번호) 및 아파트코드	주택형(주거전용 면적기준)	약식표기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계	기타공용	지하주차장	합계	세대별 대지지분(㎡)	총 공급세대수	이전기관 종사자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당해	다자녀가구 기타	신혼부부 당해	신혼부부 기타	노부모부양 당해	노부모부양 기타	계	일반공급	해당동	최저층 우선배정 세대	입주예정시기
민영주택	2018000552-01	84.1711A	84A, 84A1, 84A2, 84A3, 84A4, 84A5, 84A6, 84A7, 84A8, 84A9	84.1711	28.4518	112.6229	7.7637	56.4399	176.8265	42.7631	239	119	24	12	12	12	12	5	4	200	39	301동,303동,305동,306동,307동,308동,309동	8	2021년 9월
	2018000552-02	84.1711B	84B, 84B1, 84B2, 84B3	84.1711	28.5238	112.6949	7.7637	56.4399	176.8985	42.7631	88	44	9	4	4	5	4	2	1	73	15	301동,303동,305동,306동,309동	–	
	2018000552-03	84.1666C	84C, 84C1	84.1666	28.6361	112.8027	7.7633	56.4369	177.0029	42.7608	6	3								3	3	303동,305동	–	
	2018000552-04	84.6529D	84D, 84D1, 84D2, 84D3, 84D4	84.6529	29.5622	114.2151	7.8082	56.7630	178.7863	43.0079	8	4	1			1				6	2	303동,305동,307동,308동	2	
	2018000552-05	84.6529E	84E, 84E1	84.6529	29.6315	114.2844	7.8082	56.7630	178.8556	43.0079	6	3								3	3	301동,303동,305동	–	
	2018000552-06	84.6579F	84F, 84F1	84.6579	29.1479	113.8058	7.8086	56.7663	178.3807	43.0104	6	3								3	3	301동,303동,305동	–	
	2018000552-07	84.5465G	84G, 84G1	84.5465	29.3128	113.8593	7.7983	56.6916	178.3492	42.9538	33	17	3	2	1	2	1	1		27	6	306동,309동	3	
	2018000552-08	84.4525H	84H	84.4525	29.1587	113.6112	7.7897	56.6286	178.0295	42.9061	2	1								1	1	302동,304동	2	
	2018000552-09	86.3675A	86A, 86A1	86.3675	29.4393	115.8068	7.9663	57.9127	181.6858	43.8790	6	3								3	3	301동,303동,305동	3	
	2018000552-10	86.4909B	86B, 86B1	86.4909	29.7166	116.2075	7.9777	57.9954	182.1806	43.9417	3	1								1	2	301동,303동,305동	3	
	2018000552-11	86.6660C	86C, 86C1	86.6660	29.1522	115.8182	7.9939	58.1128	181.9249	44.0306	10	5								5	5	303동,305동,307동,308동	–	
	2018000552-12	87.2195	87, 87-1	87.2195	30.4450	117.6645	8.0449	58.4840	184.1934	44.3119	6	3								3	3	301동,303동,305동	–	
	2018000552-13	88.3460	88, 88-1	88.3460	30.7118	119.0578	8.1489	59.2393	186.4460	44.8842	27	14		2	1			1		18	9	301동,303동,305동,307동,308동	6	
	2018000552-14	92.3574	92	92.3574	30.4957	122.8531	8.5188	61.9291	193.3010	46.9222	4	2								2	2	307동,308동	–	
	2018000552-15	97.2550T	97T, 97T1	97.2550	32.9833	130.2383	8.9706	65.2131	204.4220	49.4104	2	1								1	1	306동,309동	–	
	2018000552-16	97.9556A	97A, 97A1, 97A2	97.9556	31.9365	129.8921	9.0352	65.6829	204.6102	49.7663	6	3								3	3	301동	–	
	2018000552-17	97.9409B	97B	97.9409	32.1451	130.0860	9.0339	65.6731	204.7930	49.7589	3	1								1	2	301동	–	
	2018000552-18	97.2828C	97C, 97C1	97.2828	32.1935	129.4763	8.9732	65.2318	203.6813	49.4245	2	1								1	1	301동	1	
	2018000552-19	97.4438D	97D	97.4438	32.2420	129.6858	8.9880	65.3397	204.0135	49.5063	3	2								2	1	301동	–	
	2018000552-20	98.8226	98, 98-1, 98-2, 98-3, 98-4, 98-5	98.8226	32.6829	131.5055	9.1152	66.2643	206.8850	50.2068	247	124		12	12			5	4	157	90	302동,304동,307동,308동	4	
	2018000552-21	99.9626	99, 99-1	99.9626	32.9528	132.9154	9.2203	67.0287	209.1644	50.7860	4	2								2	2	307동,308동	–	
	2018000552-22	100.6571A	100A, 100A1	100.6571	33.1173	133.7744	9.2844	67.4944	210.5532	51.1388	6	3								3	3	307동,308동	–	
	2018000552-23	100.8056B	100B, 100B1	100.8056	33.1525	133.9581	9.2981	67.5940	210.8502	51.2143	4	2								2	2	307동,308동	–	
	2018000552-24	102.7076	102, 102-1, 102-2	102.7076	33.6029	136.3105	9.4736	68.8693	214.6534	52.1806	10	5								5	5	307동,308동	2	
	2018000552-25	108.4474	108	108.4474	34.5456	142.9930	10.0029	72.7181	225.7140	55.0967	3	2								2	1	301동	1	
	2018000552-26	112.0469T	112T	112.0469	37.4494	149.4963	10.3350	75.1317	234.9630	56.9254	2	1								1	1	302동,304동	–	
	2018000552-27	115.1618	115, 115-1, 115-2, 115-3	115.1618	37.7691	152.9309	10.6223	77.2203	240.7735	58.5079	8	4						1		5	3	302동,304동,307동,308동	–	
	2018000552-28	113.1577T	113T, 113T1	113.1577	36.8403	149.9980	10.4374	75.8765	236.3119	57.4897	2	1								1	1	306동,309동	–	
	2018000552-29	114.7026	114	114.7026	37.2399	151.9425	10.5800	76.9124	239.4349	58.2746	2	1								1	1	307동,308동	2	
	2018000552-30	121.9742P	121P, 121P1	121.9742	41.4682	163.4424	11.2506	81.7883	256.4813	61.9690	5	3								3	2	301동,303동,305동,306동,309동	–	
	2018000552-31	120.1699	120	120.1699	38.8501	159.0200	11.0842	80.5784	250.6826	61.0523	6	3								3	3	307동,308동	–	
	2018000552-32	133.9348	133	133.9348	42.7317	176.6665	12.3539	89.8083	278.8287	68.0456	2	1								1	1	302동,304동	2	
	2018000552-33	143.2912S	143S	143.2912	48.5839	191.8751	13.2169	96.0821	301.1744	72.7991	2	1								1	1	307동,308동	2	
	2018000552-34	148.7501T	148T, 148T1	148.7501	50.3531	199.1032	13.7204	99.7425	312.5661	75.5725	2	1								1	1	306동,309동	–	
	2018000552-35	149.9546T	149T	149.9546	48.5711	198.5257	13.8315	100.5502	312.9074	76.1844	2	1								1	1	302동,304동	–	
	2018000552-36	158.3603P	158P	158.3603	52.1116	210.4719	14.6069	106.1865	331.2653	80.4549	4	2								2	2	302동,304동,307동,308동	–	

※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4자리까지 표기하여 합계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 세대, 원)

타입	전용면적(㎡)	동별(라인별)	층	세대수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합계	계약금 1차(10%) 계약시	계약금 2차(10%) 2018.09.10.	중도금 1회(10%) 2019.04.10.	중도금 2회(10%) 2019.11.10.	중도금 3회(10%) 2020.08.10.	중도금 4회(10%) 2021.04.10.	잔금(40%) 입주지정일
84.1711A	84.1711	301동,303동 305동,306동 307동,308동 309동	1층	3	71,258,287	268,441,713	–	339,700,000	33,970,000	33,970,000	33,970,000	33,970,000	33,970,000	33,970,000	135,880,000
			2층	8	71,258,287	270,041,713	–	341,300,000	34,130,000	34,130,000	34,130,000	34,130,000	34,130,000	34,130,000	136,520,000
			3층	8	71,258,287	271,841,713	–	343,100,000	34,310,000	34,310,000	34,310,000	34,310,000	34,310,000	34,310,000	137,240,000
			4층	10	71,258,287	273,541,713	–	344,800,000	34,480,000	34,480,000	34,480,000	34,480,000	34,480,000	34,480,000	137,920,000
			5층	10	71,258,287	278,841,713	–	350,100,000	35,010,000	35,010,000	35,010,000	35,010,000	35,010,000	35,010,000	140,040,000
			6~10층	54	71,258,287	280,441,713	–	351,700,000	35,170,000	35,170,000	35,170,000	35,170,000	35,170,000	35,170,000	140,680,000
			11~20층	87	71,258,287	282,241,713	–	353,500,000	35,350,000	35,350,000	35,350,000	35,350,000	35,350,000	35,350,000	141,400,000
			21~30층	50	71,258,287	288,941,713	–	360,200,000	36,020,000	36,020,000	36,020,000	36,020,000	36,020,000	36,020,000	144,080,000
			31층이상	9	71,258,287	292,441,713	–	363,700,000	36,370,000	36,370,000	36,370,000	36,370,000	36,370,000	36,370,000	145,480,000
84.1711B	84.1711	301동,303동 305동,306동 309동	15~20층	29	71,258,287	282,441,713	–	353,700,000	35,370,000	35,370,000	35,370,000	35,370,000	35,370,000	35,370,000	141,480,000
			21~30층	50	71,258,287	289,241,713	–	360,500,000	36,050,000	36,050,000	36,050,000	36,050,000	36,050,000	36,050,000	144,200,000
			31층이상	9	71,258,287	292,641,713	–	363,900,000	36,390,000	36,390,000	36,390,000	36,390,000	36,390,000	36,390,000	145,560,000
84.1666C	84.1666	303동, 305동	8~10층	6	71,254,455	281,045,545	–	352,300,000	35,230,000	35,230,000	35,230,000	35,230,000	35,230,000	35,230,000	140,920,000
84.6529D	84.6529	303동,305동 307동,308동	2층	2	71,666,210	274,433,790	–	346,100,000	34,610,000	34,610,000	34,610,000	34,610,000	34,610,000	34,610,000	138,440,000
			3층	2	71,666,210	276,333,790	–	348,000,000	34,800,000	34,800,000	34,800,000	34,800,000	34,800,000	34,800,000	139,200,000
			5층	4	71,666,210	283,333,790	–	355,000,000	35,500,000	35,500,000	35,500,000	35,500,000	35,500,000	35,500,000	142,000,000
84.6529E	84.6529	301동,303동,305동	6~7층	6	71,666,210	285,233,790	–	356,900,000	35,690,000	35,690,000	35,690,000	35,690,000	35,690,000	35,690,000	142,760,000
84.6579F	84.6579	301동,303동,305동	5층	3	71,670,376	282,029,624	–	353,700,000	35,370,000	35,370,000	35,370,000	35,370,000	35,370,000	35,370,000	141,480,000
			9층	3	71,670,376	283,729,624	–	355,400,000	35,540,000	35,540,000	35,540,000	35,540,000	35,540,000	35,540,000	142,160,000
84.5465G	84.5465	306동, 309동	2층	2	71,576,060	271,623,940	–	343,200,000	34,320,000	34,320,000	34,320,000	34,320,000	34,320,000	34,320,000	137,280,000
			3층	3	71,576,060	273,523,940	–	345,100,000	34,510,000	34,510,000	34,510,000	34,510,000	34,510,000	34,510,000	138,040,000
			4층	3	71,576,060	275,123,940	–	346,700,000	34,670,000	34,670,000	34,670,000	34,670,000	34,670,000	34,670,000	138,680,000
			5층	3	71,576,060	280,523,940	–	352,100,000	35,210,000	35,210,000	35,210,000	35,210,000	35,210,000	35,210,000	140,840,000
			6~10층	15	71,576,060	282,123,940	–	353,700,000	35,370,000	35,370,000	35,370,000	35,370,000	35,370,000	35,370,000	141,480,000
			11~15층	7	71,576,060	283,923,940	–	355,500,000	35,550,000	35,550,000	35,550,000	35,550,000	35,550,000	35,550,000	142,200,000
84.4525H	84.4525	302동, 304동	3층	2	71,496,575	274,703,425	–	346,200,000	34,620,000	34,620,000	34,620,000	34,620,000	34,620,000	34,620,000	138,480,000
86.3675A	86.3675	301동,303동,305동	4층	3	73,117,767	256,711,121	25,671,112	355,500,000	35,550,000	35,550,000	35,550,000	35,550,000	35,550,000	35,550,000	142,200,000
			8층	3	73,117,767	263,165,666	26,316,567	362,600,000	36,260,000	36,260,000	36,260,000	36,260,000	36,260,000	36,260,000	145,040,000
86.4909B	86.4909	301동,303동,305동	4층	3	73,222,247	257,707,048	25,770,705	356,700,000	35,670,000	35,670,000	35,670,000	35,670,000	35,670,000	35,670,000	142,680,000
86.6660C	86.6660	303동,305동 307동,308동	4층	4	73,370,386	256,481,467	25,648,147	355,500,000	35,550,000	35,550,000	35,550,000	35,550,000	35,550,000	35,550,000	142,200,000
			5층	2	73,370,386	261,390,558	26,139,056	360,900,000	36,090,000	36,090,000	36,090,000	36,090,000	36,090,000	36,090,000	144,360,000
			8~9층	4	73,370,386	262,936,013	26,293,601	362,600,000	36,260,000	36,260,000	36,260,000	36,260,000	36,260,000	36,260,000	145,040,000
87.2195	87.2195	301동,303동,305동	6~7층	6	73,839,130	267,782,609	26,778,261	368,400,000	36,840,000	36,840,000	36,840,000	36,840,000	36,840,000	36,840,000	147,360,000
88.3460	88.3460	301동,303동 305동,307동 308동	1층	4	74,792,782	259,370,198	25,937,020	360,100,000	36,010,000	36,010,000	36,010,000	36,010,000	36,010,000	36,010,000	144,040,000
			2층	6	74,792,782	260,915,653	26,091,565	361,800,000	36,180,000	36,180,000	36,180,000	36,180,000	36,180,000	36,180,000	144,720,000
			3층	6	74,792,782	262,642,925	26,264,293	363,700,000	36,370,000	36,370,000	36,370,000	36,370,000	36,370,000	36,370,000	145,480,000
			4층	2	74,792,782	264,188,380	26,418,838	365,400,000	36,540,000	36,540,000	36,540,000	36,540,000	36,540,000	36,540,000	146,160,000
			5층	2	74,792,782	269,279,289	26,927,929	371,000,000	37,100,000	37,100,000	37,100,000	37,100,000	37,100,000	37,100,000	148,400,000
			6~9층	10	74,792,782	270,824,744	27,082,474	372,700,000	37,270,000	37,270,000	37,270,000	37,270,000	37,270,000	37,270,000	149,080,000
92.3574	92.3574	307동, 308동	3층	4	78,188,803	270,101,088	27,010,109	375,300,000	37,530,000	37,530,000	37,530,000	37,530,000	37,530,000	37,530,000	150,120,000
97.2550T	97.2550	306동, 309동	14층	2	82,335,015	315,877,259	31,587,726	429,800,000	42,980,000	42,980,000	42,980,000	42,980,000	42,980,000	42,980,000	171,920,000
97.9556A	97.9556	301동	4층	1	82,928,069	287,065,392	28,706,539	398,700,000	39,870,000	39,870,000	39,870,000	39,870,000	39,870,000	39,870,000	159,480,000
			5층	1	82,928,069	292,610,846	29,261,085	404,800,000	40,480,000	40,480,000	40,480,000	40,480,000	40,480,000	40,480,000	161,920,000
			6~7층	4	82,928,069	294,338,119	29,433,812	406,700,000	40,670,000	40,670,000	40,670,000	40,670,000	40,670,000	40,670,000	162,680,000
97.9409B	97.9409	301동	8~10층	3	82,915,738	294,894,784	29,489,478	407,300,000	40,730,000	40,730,000	40,730,000	40,730,000	40,730,000	40,730,000	162,920,000
97.2828C	97.2828	301동	2층	1	82,358,511	282,764,990	28,276,499	393,400,000	39,340,000	39,340,000	39,340,000	39,340,000	39,340,000	39,340,000	157,360,000
			3층	1	82,358,511	284,674,081	28,467,408	395,500,000	39,550,000	39,550,000	39,550,000	39,550,000	39,550,000	39,550,000	158,200,000
97.4438D	97.4438	301동	5층	1	82,494,818	292,368,347	29,236,835	404,100,000	40,410,000	40,410,000	40,410,000	40,410,000	40,410,000	40,410,000	161,640,000
			8~9층	2	82,494,818	294,095,620	29,409,562	406,000,000	40,600,000	40,600,000	40,600,000	40,600,000	40,600,000	40,600,000	162,400,000
98.8226	98.8226	302동,304동 307동,308동	3층	3	83,662,096	289,125,367	28,912,537	401,700,000	40,170,000	40,170,000	40,170,000	40,170,000	40,170,000	40,170,000	160,680,000
			4층	4	83,662,096	290,852,640	29,085,264	403,600,000	40,360,000	40,360,000	40,360,000	40,360,000	40,360,000	40,360,000	161,440,000
			5층	4	83,662,096	296,489,004	29,648,900	409,800,000	40,980,000	40,980,000	40,980,000	40,980,000	40,980,000	40,980,000	163,920,000
			6~10층	36	83,662,096	298,216,276	29,821,628	411,700,000	41,170,000	41,170,000	41,170,000	41,170,000	41,170,000	41,170,000	164,680,000
			11~20층	88	83,662,096	300,125,367	30,012,537	413,800,000	41,380,000	41,380,000	41,380,000	41,380,000	41,380,000	41,380,000	165,520,000
			21~30층	80	83,662,096	307,307,185	30,730,719	421,700,000	42,170,000	42,170,000	42,170,000	42,170,000	42,170,000	42,170,000	168,680,000
			31층이상	32	83,662,096	310,943,549	31,094,355	425,700,000	42,570,000	42,570,000	42,570,000	42,570,000	42,570,000	42,570,000	170,280,000
99.9626	99.9626	307동, 308동	6층, 9층	4	84,627,246	301,338,867	30,133,887	416,100,000	41,610,000	41,610,000	41,610,000	41,610,000	41,610,000	41,610,000	166,440,000
100.6571A	100.6571	307동, 308동	4층	2	85,215,134	296,804,424	29,680,442	411,700,000	41,170,000	41,170,000	41,170,000	41,170,000	41,170,000	41,170,000	164,680,000
			5층	2	85,215,134	302,531,696	30,253,170	418,000,000	41,800,000	41,800,000	41,800,000	41,800,000	41,800,000	41,800,000	167,200,000
			10층	2	85,215,134	304,258,969	30,425,897	419,900,000	41,990,000	41,990,000	41,990,000	41,990,000	41,990,000	41,990,000	167,960,000
100.8056B	100.8056	307동, 308동	7~8층	4	85,340,944	304,690,051	30,469,005	420,500,000	42,050,000	42,050,000	42,050,000	42,050,000	42,050,000	42,050,000	168,200,000
102.7076	102.7076	307동, 308동	1층	2	86,951,138	296,680,784	29,668,078	413,300,000	41,330,000	41,330,000	41,330,000	41,330,000	41,330,000	41,330,000	165,320,000
			2층	2	86,951,138	298,498,965	29,849,897	415,300,000	41,530,000	41,530,000	41,530,000	41,530,000	41,530,000	41,530,000	166,120,000
			3층	2	86,951,138	300,498,965	30,049,897	417,500,000	41,750,000	41,750,000	41,750,000	41,750,000	41,750,000	41,750,000	167,000,000
			11~12층	4	86,951,138	311,953,511	31,195,351	430,100,000	43,010,000	43,010,000	43,010,000	43,010,000	43,010,000	43,010,000	172,040,000
108.4474	108.4474	301동	2층	1	91,810,380	312,626,927	31,262,693	435,700,000	43,570,000	43,570,000	43,570,000	43,570,000	43,570,000	43,570,000	174,280,000
			3층	1	91,810,380	314,717,836	31,471,784	438,000,000	43,800,000	43,800,000	43,800,000	43,800,000	43,800,000	43,800,000	175,200,000
			4층	1	91,810,380	316,626,927	31,662,693	440,100,000	44,010,000	44,010,000	44,010,000	44,010,000	44,010,000	44,010,000	176,040,000
112.0469T	112.0469	302동, 304동	5층	2	94,857,635	362,493,059	36,249,306	493,600,000	49,360,000	49,360,000	49,360,000	49,360,000	49,360,000	49,360,000	197,440,000
115.1618	115.1618	302동,304동 307동,308동	31층이상	8	97,494,633	362,550,334	36,255,033	496,300,000	49,630,000	49,630,000	49,630,000	49,630,000	49,630,000	49,630,000	198,520,000
113.1577T	113.1577	306동, 309동	13층	2	95,797,956	367,365,495	36,736,549	499,900,000	49,990,000	49,990,000	49,990,000	49,990,000	49,990,000	49,990,000	199,960,000
114.7026	114.7026	307동, 308동	3층	2	97,105,874	334,812,842	33,481,284	465,400,000	46,540,000	46,540,000	46,540,000	46,540,000	46,540,000	46,540,000	186,160,000
121.9742P	121.9742	301동,303동 305동,306동309동	최상층	5	103,262,037	465,125,421	46,512,542	614,900,000	61,490,000	61,490,000	61,490,000	61,490,000	61,490,000	61,490,000	245,960,000
120.1699	120.1699	307동, 308동	4층	2	101,734,494	352,423,187	35,242,319	489,400,000	48,940,000	48,940,000	48,940,000	48,940,000	48,940,000	48,940,000	195,760,000
			5층	2	101,734,494	359,150,460	35,915,046	496,800,000	49,680,000	49,680,000	49,680,000	49,680,000	49,680,000	49,680,000	198,720,000
			6층	2	101,734,494	361,241,369	36,124,137	499,100,000	49,910,000	49,910,000	49,910,000	49,910,000	49,910,000	49,910,000	199,640,000
133.9348	133.9348	302동, 304동	3층	2	113,387,779	390,192,928	39,019,293	542,600,000	54,260,000	54,260,000	54,260,000	54,260,000	54,260,000	54,260,000	217,040,000
143.2912S	143.2912	307동, 308동	6층	2	121,308,773	476,628,388	47,662,839	645,600,000	64,560,000	64,560,000	64,560,000	64,560,000	64,560,000	64,560,000	258,240,000
148.7501T	148.7501	306동, 309동	12층	2	125,930,228	488,699,793	48,869,979	663,500,000	66,350,000	66,350,000	66,350,000	66,350,000	66,350,000	66,350,000	265,400,000
149.9546T	149.9546	302동, 304동	4층	2	126,949,867	472,045,575	47,204,558	646,200,000	64,620,000	64,620,000	64,620,000	64,620,000	64,620,000	64,620,000	258,480,000
158.3603P	158.3603	302동,304동 307동,308동	최상층	4	134,066,015	597,939,986	59,793,999	791,800,000	79,180,000	79,180,000	79,180,000	79,180,000	79,180,000	79,180,000	316,720,000

※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주택형별 약식표기 안내

주택형(㎡)	84.1711A	84.1711B	84.1666C	84.6529D	84.6529E	84.6579F	84.5465G	84.4525H	86.3675A	86.4909B	86.6660C	87.2195
사업승인시 주택표기	84A	84B	84C	84D	84E	84F	84G	84H	86A	86B	86C	87
견본주택등 약식표기	84A, 84A1, 84A2, 84A3, 84A4, 84A5, 84A6, 84A7, 84A8, 84A9	84B, 84B1, 84B2, 84B3	84C, 84C1	84D, 84D1, 84D2 84D3, 84D4	84E, 84E1	84F, 84F1	84G, 84G1	84H	86A, 86A1	86B, 86B1	86C, 86C1	87, 87-1

주택형(㎡)	88.3460	92.3574	97.2550T	97.9556A	97.9409B	97.2828C	97.4438D	98.8226	99.9626	100.6571A	100.8056B	102.7076
사업승인시 주택표기	88	92	97T	97A	97B	97C	97D	98	99	100A	100B	102
견본주택등 약식표기	88, 88-1	92	97T, 97T1	97A, 97A1, 97A2	97B	97C, 97C1	97D	98, 98-1, 98-2, 98-3, 98-4, 98-5	99, 99-1	100A, 100A1	100B, 100B1	102, 102-1, 102-2

주택형(㎡)	108.4474	112.0469T	115.1618	113.1577T	114.7026	121.9742P	120.1699	133.9348	143.2912S	148.7501T	149.9546T	158.3603P
사업승인시 주택표기	108	112T	115	113T	114	121P	120	133	143S	148T	149T	158P
견본주택등 약식표기	108	112T	115, 115-1, 115-2, 115-3	113T, 113T1	114	121P, 121P1	120	133	143S	148T, 148T1	149T	158P

※ 주택형의 구분은 입주자 모집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 홍보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될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람.

■ 공통사항
-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주택법」제57조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의결한 총액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향별, 조망권, 일조권에 따라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임.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통합취득세가 미포함된 가격이며, 부가가치세 금액이 포함되어 있음.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관리사무실,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지하주차장, 전기/기계실 등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세대별 공급금액에도 포함되어 있음.
- 상기 공급금액에는 마이너스옵션품목이 포함된 가격이며, 마이너스옵션품목은 분양 계약자 선택사항임.
- 상기 공급금액에는 추가 선택품목 및 발코니 확장 비용이 미포함 되었으며,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이며, 발코니 확장 및 붙박이형 가전 등의 계약은 분양계약 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함.
- 근린생활시설(단지내 상가)은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별도의 위치를 지정하여 할양하지 않음.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고 그 외 면적은 중심선 치수로 산정하며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
- 공급규모 층수는 건립 동별 최상층을 말함.(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층,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함)
- 분양가에 계상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관련 조세(종합토지세)는 추후 부과되는 실 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 납부시 납부하여야 함.(단, 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 기준)
- 중도금은 해당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이상 되어야 한다)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고,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잔금은 사용승인일 이후에 받음. 다만,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승인일 이후에 받을 수 있음.
- 당사가 본 아파트 "대상사업"의 시행권 및 분양자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시행자(분양자)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함.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함. • 난방방식은 지역난방이며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임.
- 분양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입주증 발급일)전에 완납하여야 함.(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 일요일 또는 국경일인 경우 다음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 중도금 금융대출을 원하는 경우 수분양자가 계약체결 후 지정된 협약은행과 대출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함. (세부적인 대출신청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함.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당사가 이자 후불제로 일정 비율에 대해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를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선납금액은 주택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고, 선납할인액은 상기 중도금 일정에 따라 계산됨.
- 중도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할인율(공급계약서 참조)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할인함. 단,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할인하며, 입주지정기간 내에는 할인료 및 연체료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청약(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및 분양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사본 불가)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는 반납하지 않고 폐기함.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모든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광고,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함.

Ⅱ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단위 : ㎡/세대)

구 분		84A	84B	84C	84D	84E	84F	84G	84H	86A	86B	86C	87	88	92	97T	97A	97B	97C
이전기관 종사자 등		119	44	3	4	3	3	17	1	3	1	5	3	14	2	1	3	1	1
일반(기관추천)	세종특별자치시 거주자(50%)	13	6		1			3											
	기타지역 거주자(50%)	11	3																
다자녀가구	세종특별자치시 거주자(50%)	12	4					2						2					
	기타지역 거주자(50%)	12	4					1						1					
신혼부부	세종특별자치시 거주자(50%)	12	5		1			2											
	기타지역 거주자(50%)	12	4					1											
노부모부양	세종특별자치시 거주자(50%)	5	2					1						1					
	기타지역 거주자(50%)	4	1																

구 분		97D	98	99	100A	100B	102	108	112T	115	113T	114	121P	120	133	143S	148T	149T	158P	합계
이전기관 종사자 등		2	124	2	3	2	5	2	1	4	1	1	3	3	1	1	1	1	2	387
일반(기관추천)	세종특별자치시 거주자(50%)																			23
	기타지역 거주자(50%)																			14
다자녀가구	세종특별자치시 거주자(50%)		12																	32
	기타지역 거주자(50%)		12																	30
신혼부부	세종특별자치시 거주자(50%)																			20
	기타지역 거주자(50%)																			17
노부모부양	세종특별자치시 거주자(50%)		5							1										15
	기타지역 거주자(50%)		4																	9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세종특별자치시 1년 미만 거주자는 기타지역 거주자에 해당됨.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공급세대수

구 분		84A	84B	84D	84G	합계
철거민	세종특별자치시 거주자(50%)	2	1			3
	기타지역 거주자(50%)	1				1
국가유공자	세종특별자치시 거주자(50%)	4	1	1	1	7
	기타지역 거주자(50%)	3	1			4
장애인	세종특별자치시 거주자(50%)	3	2		1	6
	기타지역 거주자(50%)	3	1			4
중소기업근로자	세종특별자치시 거주자(50%)	2	1			3
	기타지역 거주자(50%)	2				2
군인	세종특별자치시 거주자(50%)	2	1		1	4
	기타지역 거주자(50%)	2	1			3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 분	내 용
1회 한정 / 자격요건 / 자격제한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 청약과열지역에서 당첨되는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특별공급 청약 불가
무주택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각각 신청, 중복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당첨자 명단관리, 계약체결 불가)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주를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세대원(다음 각 목의 사람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함 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나.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ㆍ비속으로서 가족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다.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청약자격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은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된 자 중 현재 잔액기준이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된 자 중 현재 잔액기준이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특별공급별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구분	신청 자격	당첨자 선정방법
이전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8.04.09.)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7조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예정지역에 설치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등의 종사자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인정한 해당기관에서 주택특별공급 대상자로 확인하여 '주택특별공급 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 ※ 주택특별공급 대상자는 특별공급 대상기관이 예정지역으로 이전하기로 확정된 날(이전계획 고시일 또는 부지 계약일을 말함) 또는 설치된 날(업무개시일 또는 법인등기일을 말함)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특별공급 대상기관에 근무하는 자에 한함. ※ 청약주택의 입주일(2021년 09월 예정) 이전에 퇴직 예정되어 있거나, 임기제 공무원 등 계약직 종사자로서 입주일 이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자 등은 주택특별공급 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음. 단, 청약주택의 입주일 이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나 계약 연장 가능성이 있는 계약직 종사자는 대상기관장의 판단하에 주택특별공급 대상자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음. • 1회에 한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으며, 특별공급 대상인 종사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종사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종사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가 세종특별자치시내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와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에서 일반공급 등의 방법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종사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종사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는 특별공급대상자에서 제외 ※ 특별공급 대상자가 아닌 자가 청약하여 당첨되더라도 부적격자로 처리되어 계약할 수 없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관련 법령에 따름.	• 신청방법(인터넷 신청만 가능함) – 해당 신청일에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한국주택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인터넷 청약하시기 바람. ※ 공인인증서는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한국증권전산, 한국전자인증, 한국정보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중 하나의 공인인증서를 소지하여야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음. ⊙ 특별공급(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종사자 등) 신청방법 한국주택협회 홈페이지 접속(www.housing.or.kr) → 메인화면의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시스템(세종시)" 선택(http://apt.housing.or.kr) →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 선택 → 사업명 선택 → 주택형 선택 → 유의사항 확인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서약서 동의 → 청약내용 입력 → 청약내용 확인 → 청약신청 제출(공인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완료 • 신청시간 – 인터넷 청약 시간은 09:00~17:30이며, 청약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있게 신청하시기 바람 – 인터넷 청약 신청 시 신청 당일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수정 또는 삭제)이 불가능함.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을 경우 전산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하며, 당첨자에 대한 동ㆍ호배정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전산관리지정기관(금융결제원)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로 추첨함. (미신청ㆍ미계약 동ㆍ호 발생 시에도 동ㆍ호변경 불가) – 신청자가 미달된 잔여물량이 발생될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되며, 부적격당첨자의 동ㆍ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 대상자 / 추천기관 구분 / 관련법규 / 해당기관: 철거주택 소유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1호, 철거주택 소유자 – LH 세종특별본부 국가유공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2호, 3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 국가보훈처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제32조,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 각 지자체 중소기업근로자 – 「중소기업인력 지원특별법」제3조,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중소벤처기업부 군인 – 「군인복지기본법」제10조,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 국군복지단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철거주택소유자,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제외)	•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당사에 통보한 자만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제반서류를 구비하여 견본주택에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함[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ㆍ호배정) 및 계약 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 주택형은 특별공급 신청일 당일 기관별 대상자들의 우선순위에 따라 우선 선정함(장애인의 경우 각 기관의 우선순위자들이 추첨을 통해 순번에 따라 주택형을 선정하며, 순차적으로 차순위자들이 추첨을 통해 순번에 따라 선정) ※ 기관추천 특별공급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원이 일반공급을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은 취소되고 일반공급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어 1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8.04.09.) 현재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 ①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인 직계자녀 3명 이상을 둔 자(태아, 입양자녀 포함) ※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ㆍ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됨(출산관련자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계약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자는 입주 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낙태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입양의 경우 입주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등)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취소 및 계약 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됨 ※ 재혼으로 성이 다른 직계가 아닌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청약신청자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②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운용지침」관련 법령에 따름.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역 제한없이 신청 가능하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4조 제1항, 동조동항 제1의2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 제2016-13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고 제2016-62호에 따라 공급세대수의 50%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년이상 세종특별자치시에 계속 거주한 자(2017.04.09. 이전부터 계속 거주한 자)가 우선함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우선순위로 선정 ① 미성년 자녀수(태아 및 입양아 포함)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신혼부부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 ① 혼인(혼인신고일 기준, 재혼포함)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임신 중(입주자모집공고일이후 발급받은 진단서로 확인, 이하 동일)이거나 출산 (자녀의 기본증명서상 출생신고일,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신고일 기준, 이하 동일)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를 말한다.) 이하일 것 ※ 재혼한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에 임신중이거나 출산(입양을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 출산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관련자료(출생증명서, 유산ㆍ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됨(출산관련자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계약서류 제출 시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자는 입주 시까지 출생증명서 또는 유산ㆍ낙태관련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입양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등)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입주 전 파양한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취소 및 계약취소되며, 향후 신청이 제한됨 ②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등 관련 법령에 따름.	•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역 제한 없이 신청가능하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4조 제1항, 동조동항 제1의2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 제2016-13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고 제2016-62호에 따라 공급세대수의 50%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년이상 세종특별자치시에 계속 거주한 자(2017.04.09. 이전부터 계속 거주한 자)가 우선함. •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혼인기간 및 자녀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함. – 제1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기준, 이하 동일)이거나 출산(자녀의 기본증명서상 출생신고일 기준,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신고일 기준, 이하 동일)하여 자녀가 있는 자 – 제2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함. ① 미성년인 자녀(태아를 포함) 수가 많은 자(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도 포함. 단, 신청자 및 현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만 포함) ② 미성년인 자녀(태아를 포함) 수가 같은 경우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재혼한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가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만 1,2순위자로 인정되나, 우선순위 선정을 위해 자녀수를 산정할 때 이전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가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포함(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하여 산정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8.04.09.) 현재 아래 조건을 모두 갖춘 무주택세대주 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에 따른 1순위에 해당하는 자 ※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경우 1순위자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주택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지역별ㆍ면적별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한 자 ㉡ 세대주인 자 ㉢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닌 자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닌 자 ②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세대주 ③ 피부양 직계존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신청 시 그 배우자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 기간에서 제외) ※ 무주택세대주기간 산정시 노부모(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도 포함)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에 따라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음. ④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24개월 이상(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운용지침」 등 관련 법령에 따름.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지역 제한 없이 신청가능하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4조제1항, 동조동항 제1의2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고시 제2016-13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고 제2016-62호에 따라 공급세대수의 50%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년이상 세종특별자치시에 계속 거주한 자(2017.04.09. 이전부터 계속 거주한 자)가 우선함. •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름 ※ 가점제 점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2호나목의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로 산정함.

※ 당첨자 선정(공고) 유의사항
– 입주선정자는 개별통지 하지 않으며, 입주선정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응답하지 않으니 양지하시기 바람.
– 사업주체는 당첨자만 선정하며, 동ㆍ호수 배정업무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금융결제원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으로 배정함.(동ㆍ호 배정결과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공고할 예정임)
※ 특별공급의 추첨순서는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순으로 추첨함.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신청시 배점표에 자필작성 및 점수기재)

배 점 표(해당사항 있는 각 항목에 ✓표기)

평점요소	총 배점	배점기준 기준	점수	해당사항	비 고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5명 이상	40		자녀(태아나 입양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4명	35		
		3명	30		
영유아 자녀수(2)	15	3명 이상	15		영유아(태아를 포함한다)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2명	10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의 "가점제 적용기준"에 따름.
		5년 이상 10년 미만	15		
		1년 이상 5년 미만	10		
해당 시ㆍ도 거주 기간(5)	15	10년 이상	15		공급신청자가 해당 지역(세종특별자치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10		
		1년 이상 5년 미만	5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유 의 사 항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ㆍ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상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상이 및 주택소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기간 내에 당첨 받는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ㆍ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됨.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구분	2017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3인 이하	4인	5인 이상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100%)	5,002,590원 이하	5,846,903원 이하	5,846,903원 이하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6,003,108원 이하	7,016,284원 이하	7,016,284원 이하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 이하인 자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가구당 소득의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함)으로 하되,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주의 성년인 직계존ㆍ비속도 세대원으로 간주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함.

■ 특별공급 당첨자 및 동ㆍ호수 결정 방법 및 유의사항

구분	내용
당첨자 동ㆍ호수 결정 등	• 동ㆍ호수 추첨은 금융결제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 대상자와 함께 진행되며 동ㆍ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함.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부적격세대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관계법령에 따라 공급함.
유의사항	• 특별공급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원이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제58조에 따라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은 취소되고 일반공급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1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제출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음. • 공급별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마감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람.(신청자, 배우자, 세대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함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 될 수 있음. • 부적격 당첨자는 당첨일로부터 1년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음.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함.

Ⅲ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구분	내용
신청 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8.04.09.) 현재 만 19세 이상인 자(만 19세 미만인자 중 세대주 포함)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하되 외국인은 1순위 청약 불가]
청약신청 유의사항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일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순위별 신청자격 제한이 있으므로 아래 '순위별 자격요건'에서 본인의 신청순위 적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으로서 「주택법」 제56조제2항의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나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일정기간 거주요건(세종특별자치시 1년이상 거주자 우선)이 설정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로 볼 수 없으므로 기타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야 함.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의 청약자격이 개정되었으니 청약시 참고하시기 바람.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무주택군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유주택자도 청약 가능) – 입주자저축 1년 이상 가입자 → 본 주택의 해당순위(1순위 및 2순위)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시 청약 가능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일반공급 주택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불가(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세대 2건이상 신청하여 2건이상 당첨시 재당첨제한 위반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각각 동일한 청약 관련예금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발생할 경우 세종특별자치시(1년이상 거주자) 청약자 중 낙첨자는 기타지역(세종시 1년미만 거주자 포함)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함. 또한 1순위 세종특별자치시(1년 이상 거주자) 신청접수 결과 미달세대는 기타지역(세종시 1년미만 거주자 포함)에게 공급하고, 기타지역 거주자 신청접수 결과 미달시에는 잔여물량을 각각 상기 거주 지역별 배분 비율을 적용, 배분하여 차 순위에게 공급함.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해 과태료 부과 등이 될 수 있음. • 부적격 당첨자(주택소유 부적격, 착오기재 등) 등 소명기간에 착오로 인하여 청약자격 사항을 잘못 기재하였음을 소명하여 인정되는 경우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함. • 전용면적 85㎡ 초과주택은 일반공급 대상 세대수의 50%를 가점제로, 50%를 추첨제를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신청자 미달시 추첨제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선정함. • 가점제 입주자 선정방법 : 가점점수의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 청약가점항목 및 점수 : 무주택 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17점) 등 총점 84점. • 가점제에서 탈락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추첨제 대상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함. •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 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향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국민주택 또는 민영주택 청약 신청시 1순위 청약 제약 / 재당첨제한을 받을 수 있음. •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 •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야 청약 가능함.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충족한 자에 한함)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당해지역 전입일 관련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1년 이상 계속 거주시 당해 거주지역으로 청약 신청 가능함.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청약신청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 주택청약종합저축 규모선택 및 변경절차폐지(2017.04.03.이후 모집공고 분부터 적용)에 따라 청약예치금액 충족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청약 가능함

⊙ 입주자 저축 순위별 자격요건

구분	순위	청약 관련 예금	거주구분
민영주택	1순위	• 85㎡ 이하 : 가점제(100%) 적용 / 85㎡ 초과 : 가점제(50%) 적용, 추첨제(50%) 적용 • 청약자는 가점제 / 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분류됨. 1) 가점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에 속한 자 2) 추첨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세대[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에 속한 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1호 또는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는 자는 '가점제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됨 ※ 단, 만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자 – 세대주인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아니한 자 – 2주택 이상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제5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세대에 속하지 아니한 자 ※ 과거 당첨사실 및 주택소유는 청약자 본인 및 세대원 전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대상으로 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1)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청약이 가능한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 2)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청약이 가능한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한 자 3)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청약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전국
	2순위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자 및 1순위 청약제한대상자 / 추첨제 적용(100%)	
	재당첨제한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85㎡이하 주택에 당첨된 경우 당첨일로부터 5년, 85㎡초과 주택에 당첨된 경우 당첨일로부터 3년간 당첨이 제한됨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85㎡이하 주택에 당첨된 경우 당첨일로부터 3년, 85㎡초과 주택에 당첨된 경우 당첨일로부터 1년간 당첨이 제한됨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9조제3항[별표2]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예치금액의 하위면적 모두 청약이 가능함
※ 청약예금 가입자는 예치기준금액에 따른 청약면적 변경(증액) 시 입주자모집공고전일까지 예치금액을 추가로 납입하여야 함
※ 청약저축 가입자의 민영주택 청약 시 입주자모집공고전일까지 청약예금으로 전환하여 청약할 수 있음(가입 후 1순위 자격을 취득하여 납입인정금액이 각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이상인 경우)

⊙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구 분	신 청 자 격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입주자저축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을 말한다)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아래 소형ㆍ저가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제외)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0㎡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수도권은 1억 3천만원 이하, 비수도권은 8천만원 이하인 주택(이하 "소형ㆍ저가주택"이라 한다)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자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배우자 포함)는 그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이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주택공시가격" 이라 한다) 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3) 무주택기간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함. 4) 1)부터 3)까지에 따른 무주택기간의 적용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름.
② 부양가족의 인정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 포함))으로 함. 다만,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부양가족으로 봄. 2)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3)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 최초가입일(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함. 2)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에 대한 가점점수는 청약신청 시 자동 부여함.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 명의는 가입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변경하려는 자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입주자저축취급기관에 신청하여야 함.
비 고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제6항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제5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1]제1호 가목2)에 따라 소형ㆍ저가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한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 함.

⊙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2호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 무주택기간	32	1년 미만 (무주택자에 한함)	2	8년 이상 ~ 9년 미만	18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을 확인)
		1년 이상 ~ 2년 미만	4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2년 이상 ~ 3년 미만	6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3년 이상 ~ 4년 미만	8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7년 이상 ~ 8년 미만	16	15년 이상	32	
② 부양 가족수	35	0명	5	4명	25	– 주민등록표등ㆍ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시에 자동 계산됨)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총점	84					
비고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입주자 선정방법 및 동ㆍ호수 결정

구분	선 정 방 법
특별공급	• 세종 제일풍경채 위너스카이 견본주택에서 관계자 입회하에 이전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은 전산추첨, 기타 특별공급은 공개추첨 후 당첨자 선정 • 특별공급 당첨자의 동ㆍ호는 금융결제원에서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추첨하여 배정함. • 특별공급은 별도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지 않으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분은 당첨이 취소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일반공급	• 전산관리지정기관의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에 따라 각 순위별로 다음과 같이 당첨자를 선정함 •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가점제로 선정 • 전용면적 85㎡ 초과 : 일반공급 세대수의 50%를 가점제로, 나머지 50%를 추첨제로 선정 – 입주자선정은 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선정하고, 그 나머지 수의 주택은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함 • 공급세대수의 50%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8.04.09.) 현재 1년 이상 세종특별자치시에 계속 거주한 자에게 우선 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에 따라 금회 공급주택의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 내에 만 65세 이상인 자 또는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 자녀를 세명 이상 둔 자가 있는 경우에 최하층을 우선 배정 받을 수 있사오니 최하층을 희망하는 경우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람.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신청자가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미신청자)에게도 배정될 수 있음.(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차상층을 말합니다.) 또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이 발급된 자, 미성년자 자녀를 세명 이상 둔자 사이에 경쟁이 있는 경우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이 발급된 자에게 우선배정 배정함.
예비입주자에 대한 사항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당첨자의 동ㆍ호와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미계약 동ㆍ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공급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임. • 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까지 가점이 높은자를 앞 순번의 예비입주자로 선정(2순위까지 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2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하고 남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미계약 또는 계약해지 발생 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ㆍ호수를 공개한 후 동ㆍ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ㆍ호수를 배정함.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당첨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 발표시 함께 발표됨) •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2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예비입주자 명단은 당첨자 발표 시 별도 공고함.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되고 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계약체결기간 만료 전에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계약체결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들 주택 중에서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먼저 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것으로 봄.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당사 견본주택에 내방하여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당사에 통보하여야 함. (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락처 및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 예비입주자 선정 여부(순번 포함)는 당첨자 발표시 아파트투유(www.apt2you.com)에서 "당첨사실조회" 개별조회방식으로 확인이 가능함. • 예비입주자 동ㆍ호 추첨 3일전 계약포기 및 부적격 당첨에 따른 미계약 세대 등 잔여세대를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예정임.

Ⅳ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자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이전기관 종사자	2018.04.16.(월), 09:00~17:30	• 인터넷 청약	• 한국주택협회(www.housing.or.kr) →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시스템 (세종시, http://apt.housing.or.kr)
	일반(기관추천)	2018.04.16.(월), 10:00~14:00	• 견본주택 방문접수 ※ 신청 관련 서류 미비 자 접수 불가	• 세종 제일풍경채 위너스카이 견본주택 *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 264-1번지 일원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2018.04.17.(화), 10:00~14:00		
일반공급	1순위	2018.04.19.(목), 08:00~17:30	• 인터넷 청약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www.kbstar.com)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국민은행 외 청약통장 가입자, www.apt2you.com)
	2순위	2018.04.20.(금), 08:00~17:30		

※ 일반(기관추천)/다자녀/신혼부부/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14:00까지 입장한 분에 한하여 접수 가능
※ 주택청약 참가은행(15개) : 기업, 국민, 수협, 농협, 우리, SC제일,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KEB하나, 신한은행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노약자, 장애인, 인터넷취약자 등에 대해서는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ㆍ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함.(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청약신청시 은행에서는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시 주민등록표(초)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람.

■ 특별공급 신청시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필수	서류유형 추가(해당자)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공통서류	○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접수 장소에 비치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요망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		주민등록증	본인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본인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APT2you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발급(www.apt2you.com) [장애인, 국가유공자, 철거주택소유자 제외]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다자녀 특별공급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	자녀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재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세대주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만30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제출(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혼인신고일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19세이상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의료)보험증이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일 경우 건강(의료)보험증 제출 가능]
	○		소득증빙서류	세대원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주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표1참조)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의 소득입증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기본증명서	자녀	출생관련 일자 확인 필요시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입양의 경우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임신의 경우(접수 장소에 비치)
		○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비사업자의 경우(접수 장소에 비치)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인감증명서	청약자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인감도장	청약자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위임장	청약자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		주민등록증	대리인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인장	대리인	

※ 상기 모든 증명서류(신청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18.04.09.)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 주민등록표등ㆍ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 세무서
	신규취업자	–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재직증명서	–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신규사업자	–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사업자등록증	– 국민연금관리공단 – 세무서
	법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 세무서 –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 해당직장
무직자		– 비사업자 확인각서(접수장소에 비치)	– 접수장소

■ 일반공급 인터넷 청약서비스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 국민은행 및 금융결제원에서는 청약 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은행 영업점 방문 없이 간편하고 편리하게 청약 신청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 청약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청약 신청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함.

구 분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이용대상	공통	– 1순위 :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순위가 발생한 분 – 2순위 :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자 및 1순위 청약제한대상자	
	인터넷	–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 분	
이용방법 및 절차	인터넷	– 국민은행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특화서비스 「주택신청」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완료	– 청약통장 가입은행 또는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www.apt2you.com) ▶ APT청약신청 ▶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파트투유(www.apt2you.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청약신청 안내"를 활용하시기 바람
※ 주택청약 참가은행(15개): 기업, 국민, KEB하나, 수협, 농협중앙회, 우리, SC제일,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신한은행

■ 노약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시 구비서류

구 분	구 비 사 항
본인 (배우자 포함) 신청시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본인확인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배우자 대리 신청 시 배우자 관계확인서류 추가구비(동일세대 구성 시 : 주민등록표등본 1통, 분리세대 구성 시 : 가족관계증명서 1통)
제3자 대리 신청시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존ㆍ비속포함)로 간주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 신청시 구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주택공급신청 위임용) 1통(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접수처에 비치)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Ⅴ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일정

■ 일정 및 계약장소

구 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발표	당첨자 및 동ㆍ호수 발표	계약체결
특별공급	이전기관 종사자 등	• 일시 : 2018.04.17.(화), 14:00 • 확인방법 :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시스템(세종시, http://apt.housing.or.kr)	• 일시: 2018.04.26.(목) • 확인방법 – 아파트투유 홈페이지 개별조회 (www.apt2you.com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당사 홈페이지 개별조회 (www.sejong-jeil.co.kr)	• 일시 – 2018.05.09.(수)~2018.05.11.(금) 10:00~16:00 • 장소 – 당사 견본주택 (장소 :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 264-1번지 일원)
	일반(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 일시 : 2018.04.18.(수), 16:00 ※ 특별공급 청약신청 과열로 서류심사가 지연될 경우 당첨자 선정 및 공고시간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장소 : 당사 견본주택 및 당사 홈페이지 게재		
일반공급	1순위	• 일시 : 2018.04.26.(목) • 장소 : 당사 견본주택 및 당사 홈페이지, 아파트투유 홈페이지		
	2순위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함.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적으로 통지는 하지 않음.(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인터넷 당첨자 발표 서비스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 장소 등에서 재확인하시기 바람.

구분		국민은행(국민은행에서 청약하신 분)	금융결제원(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서 청약하신 분)
이용기간		2018.04.26. ~ 2018.05.05. (당첨자 발표 일로부터 10일간)	
인 터 넷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접속 → KB부동산 → 주택청약 → 당첨확인 → 주택별 조회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t2you.com) 접속 → APT 인터넷 청약 → 당첨사실 조회 → 주택별 조회
전화(ARS)		국민은행 콜센터 1588-9999 (서비스코드 : 9→1→3)	금융결제원의 ARS 주택당첨조회서비스는 2017년 06월 15일부터 종료되었습니다.
휴대폰 문자서비스	제공대상	주택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자	
	제공일시	2018.04.26.(목) 당첨자 발표일 08:3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국민은행에서 청약하신 분은 국민은행에서 별도 서비스 제공)	

※ 전화(ARS) 및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함.

Ⅵ 계약체결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 · 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 계좌로 계약금 납부하고 필수 구비사항 및 해당 추가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구 분	계약 기간	계약 장소
당첨자 계약 체결	2018.05.09.(수) ~ 2018.05.11.(금) 3일간, 10:00 ~ 16:00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 264-1번지 세종 제일풍경채 위너스카이 견본주택

※ 순위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임의 분양함.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아래 "계약 체결조건 및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

■ 구비서류

구 분		서류유형 필수	서류유형 추가	계 약 시 구 비 사 항
본인 계약시	공통	○		– 계약금 입금 영수증 (당첨자 본인 명의)
		○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아파트 계약용)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서명인증서 1통(외국인에 한함)]
		○		– 인감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서명)
		○		–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여권)
		○		– 주민등록표등본 1통
		○		– 주민등록표초본(1년 이상 해당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직계존 · 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 한함)
			○	– 가족관계증명서 1통(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배우자 유무확인 불가 시)
			○	– 배우자 직계존속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배우자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혼인관계증명서 1통(만30세미만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 직계존 · 비속의 주민등록표초본 각 1통(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단, 직계비속은 만 30세 이상자에 한함)
			○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이전기관	○		– 특별공급대상자 확인서 (동 · 호수 발표일 이후 특별공급대상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에 한함) ※ 기관의 관인 날인된 서류에 한함
	최하층 우선배정	○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발급된 장애인등록증(만65세이상자 또는 세대구성원은 상기 공통 서류중 신분확인서류로 갈음)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해당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	–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 무허가건물 확인서 또는 철거예정 증명서
			○	– 소형, 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증명원 등)
			○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3자 대리계약시 추가사항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배우자, 직계존 · 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서류 추가 제출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아파트계약 위임용 1통) 및 인감도장, 계약자의 주민등록증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양식은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장

※ 상기 모든 증명서류(계약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특별공급대상자 확인서는 동 · 호수 발표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 발급시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발급하므로계약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 주민등록표등 · 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또는 국내거주사실 증명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1부(또는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1통)을 제출하시기 바람.
※ 계약금 입금 영수증은 반드시 당첨자 본인이 입금한 영수증이어야 하며,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됨.

■ 계약조건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이 된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함.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의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여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 부적격 당첨자를 당첨자로 인정하는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4항)
①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②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주택당첨자는 계약체결 후라도 청약가점항목(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현황 등), 1순위 청약자격 제한대상, 기재내역을 허위 또는 착오로 기재한 경우와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른 예외 사항은 제외) 등 부적격 사유가 발생되면 공급계약은 취소되고 부적격당첨자로 명단관리되며,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상기 기준에 따라 주택소유여부 및 과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 당첨사실 유무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 소유 및 당첨 사실을 포함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함.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 시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함.
• 지정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하여는 입주 및 잔금완납 여부와 관계 없이 입주자가 부담함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함.
• 인지세법에 따라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 · 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문서인 분양계약서를 작성할 시에는 계약자가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아파트 및 상가의 대지면적이 차후 분할로 인하여 면적이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후 상호 정산함.
• 입주지정일자를 지정하여 지정계약자들에게 통보하여 사전점검토록 할 예정임.
• 단지주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 배치 · 구조 및 동 ·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 조망권 · 소음 ·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행정구역, 단지 내 명칭 및 동 · 호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입주 전 별도 통보할 예정이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
•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함.
•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소명기간이 지난 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동 · 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 · 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함.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따로 공급방법을 정하여 공급할 수 있음.
• 계약체결 후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 위약금을 배상하여야 함.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에 따름.

■ 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58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함.
• 제58조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봄. 다만, 제57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아래의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아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음.
• 당사는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견본주택에서 일체의 현금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무통장 입금시 동 ·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람.
• 타인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문제에 대하여 당사에서는 일체의 책임을지지 않음. 단, 계약금 입금자가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이 경우 환불일까지의 이자는 인정하지 않음)

금융기관	계좌구분	계좌번호	예금주
농협은행	분양대금	317-0013-7743-71	㈜제일풍경채

※ 상기계좌는 분양대금 납부계좌로서 발코니 확장 공사비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계약자 대출안내
• 해당 주택건설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은 「주택법」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및 「소득세법」제104조의2에 따른 투기지구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3]에 따른 청약과열지역으로서, 중도금대출이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되므로 청약 및 계약체결 전 중도금대출 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람, 중도금대출이 불가할 경우 계약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하여야 함.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향후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중도금 이자 후불제)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람. • 중도금대출은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기준으로 안내하는 것으로서, 중도금대출(잔금)의 대출관련 사항은 향후 정부정책 또는 금융기관의 대출취급방침 변경으로 인하여 사업주체가 중도금대출을 알선하지 못할 경우 분양대금을 계약자 본인의 책임하에 조달하여 납부조건에 따라 각 납부회차별로 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함.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 제한 등) 또는 계약자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에 따라 중도금 대출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계약자 본인의 책임하에 조달하여, 납부조건에 따라 각 납부회차별로 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함.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한국주택금융공사(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금융권의 대출 부적격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일에 분양대금(중도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에 관한 연체료 발생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통지하지 않음,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 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 할 수 없음.
• 중도금 대출약정 기간은 당사(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로 하고 대출이자는 후불제로 당사가 일정 비율에 한해 선납하며,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대출이자는 계약자 본인이 납부하여야 함.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부도 ·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당사가 후불제로 선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중도금 대출 지정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중도금 대출 담당 금융기관은 정부 금융정책 및 금융기관 사정에 따라 선정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중도금 납입예정일은 조정될 수 있으니 이에 따른 내용을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며 중도금 납입일 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중도금 대출 담당 금융기관이 지정하며 제1금융권 지점이 불가할 경우 제2금융권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중도금 대출신청 관련 안내는 당사 의무사항이 없으며 "개인사유로 인해 대출미신청" 또는 "금융거래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음.
• 당사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률에 따른 중도금 납입일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분양금액 조정에 따른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며, 계약자가 직접 분양대금을 납부하여야 함.
• 계약자는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시기에 대출금을 계약자의 신용 및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대출로 대체하여 사업주체의 연대보증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분양공급계약이 계약자의 사정이나 귀책사유로 인해 해제가 될 경우 계약자는 위약금과 별도로 사업주체가 대납한 이자전액을 사업주체에게 지급하여야 함.
• 중도금 대출은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에 대출신청 후 심사가 완료되어 문제가 없는 경우에 대출실행 가능하며, 개인이 대출신청하지 않거나 신용 및 금융기관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대출실행이 불가한 자는 개인이 중도금 납입일에 맞춰 본인의 자금으로 직접 입금하여야하며 이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함.

■ 입주자 사전방문 관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3항27호에 의한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입주개시 약 1~2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 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함.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적용됨.

■ 입주예정일 : 2021년 09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됨 단, 기 납입한 선납할인금액은 실입주예정일에 따라 정산함)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
• 인허가청 또는 관련 기관(교육청)에서 입주예정일을 앞당기길 요청할 경우 사전 공지에 의해 앞당길 수 있으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함.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 여부와 관계 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며, 계약자의 납부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 계약자가 이를 배상함. 단,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계약자가 잔금을 완납한 날"로부터 제세공과금을 계약자가 부담함.
• 추후 당사가 안내하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입주지정기간 내에 입주한 경우 실입주일) 세대 시설물에 대한 관리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입주여부와 상관없이 일반관리비 및 세대관리비(전기/수도/가스/난방 등 포함)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함.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에는 열쇠불출일로부터 관리비가 부과되며, 인테리어 공사시 발생되는 쓰레기, 폐기물 등은 계약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함)
• 계약자는 입주지정기간 내에 잔여 중도금 및 잔금, 연체료 등을 완납하고,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제반서류 및 비용(중도금 대출 상환영수증 또는 중도금대출에서 담보대출로 대환되는 은행확인 서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비용, 선수관리비 납부영수증 등)"을 사업주체에게 제출 또는 납부한 후에 입주증을 발급받아 입주하여야 함.
• 계약자는 아파트 사용승인일(임시사용승인시는 그 승인일)과 분양대금 잔금납부일 중 늦은 날을 취득일로 보아 60일 이내에 계약자의 비용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이전절차를 완료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제피해 및 공과금은 계약자가 전적 부담하여야 함.
• 취득세 부과 · 징수기관에서 정한 비율이상의 분양대금을 납부하였을 경우 잔금을 모두 납부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거래관념상 잔금을 모두 납부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득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취득세 납부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으니 계약자는 반드시 관련기관에 별도 문의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계약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사업주체는 책임을 지지 아니함.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1), 경로당(1), 게스트하우스(1), 보육시설(1), 헬스스테이션[피트니스센터, G.X룸, 사우나, 골프연습장], 에듀스테이션[작은도서관(1), 갤러리(1)] 등

Ⅶ 발코니 확장 및 시스템 에어컨, 플러스 옵션, 마이너스 옵션

▣ 발코니 확장 (단위 : 원, VAT 포함)

타입	발코니 확장면적	확장금액	계약금 계약시	중도금 2019.04.10	잔금 입주지정일	타입	발코니 확장면적	확장금액	계약금 계약시	중도금 2019.04.10	잔금 입주지정일
84A	29.1768	14,185,000	2,000,000	1,000,000	11,185,000	97A	30.8035	13,824,000	2,000,000	1,000,000	10,824,000
84A1	29.1768	15,475,000	2,000,000	1,000,000	12,475,000	97A1	30.8035	15,352,000	2,000,000	1,000,000	12,352,000
84A2	29.1768	15,484,000	2,000,000	1,000,000	12,484,000	97A2	30.8035	15,220,000	2,000,000	1,000,000	12,220,000
84A3	29.1768	15,484,000	2,000,000	1,000,000	12,484,000	97B	38.7330	15,503,000	2,000,000	1,000,000	12,503,000
84A4	29.1768	15,771,000	2,000,000	1,000,000	12,771,000	97C	30.8570	13,214,000	2,000,000	1,000,000	10,214,000
84A5	29.1768	14,185,000	2,000,000	1,000,000	11,185,000	97C1	30.8570	13,291,000	2,000,000	1,000,000	10,291,000
84A6	29.1768	15,475,000	2,000,000	1,000,000	12,475,000	97D	31.7648	13,848,000	2,000,000	1,000,000	10,848,000
84A7	29.1768	15,457,000	2,000,000	1,000,000	12,457,000	98	36.2374	18,509,000	2,000,000	1,000,000	15,509,000
84A8	29.1768	15,436,000	2,000,000	1,000,000	12,436,000	98-1	36.2374	18,666,000	2,000,000	1,000,000	15,666,000
84A9	29.1768	15,485,000	2,000,000	1,000,000	12,485,000	98-2	36.2374	18,666,000	2,000,000	1,000,000	15,666,000
84B	32.7768	15,335,000	2,000,000	1,000,000	12,335,000	98-3	34.9206	17,816,000	2,000,000	1,000,000	14,816,000
84B1	32.7768	15,326,000	2,000,000	1,000,000	12,326,000	98-4	34.9206	17,973,000	2,000,000	1,000,000	14,973,000
84B2	32.7768	15,335,000	2,000,000	1,000,000	12,335,000	98-5	36.2374	18,666,000	2,000,000	1,000,000	15,666,000
84B3	32.7768	15,326,000	2,000,000	1,000,000	12,326,000	99	35.5503	18,578,000	2,000,000	1,000,000	15,578,000
84C	38.4440	16,398,000	2,000,000	1,000,000	13,398,000	99-1	35.5503	18,578,000	2,000,000	1,000,000	15,578,000
84C1	38.4440	16,390,000	2,000,000	1,000,000	13,390,000	100A	36.6900	18,567,000	2,000,000	1,000,000	15,567,000
84D	29.3775	14,285,000	2,000,000	1,000,000	11,285,000	100A1	36.6900	18,725,000	2,000,000	1,000,000	15,725,000
84D1	29.3775	15,974,000	2,000,000	1,000,000	12,974,000	100B	35.7858	18,656,000	2,000,000	1,000,000	15,656,000
84D2	29.3775	15,814,000	2,000,000	1,000,000	12,814,000	100B1	35.7858	18,656,000	2,000,000	1,000,000	15,656,000
84D3	29.3775	15,886,000	2,000,000	1,000,000	12,886,000	102	36.2452	17,043,000	2,000,000	1,000,000	14,043,000
84D4	29.3775	15,822,000	2,000,000	1,000,000	12,822,000	102-1	36.2452	17,200,000	2,000,000	1,000,000	14,200,000
84E	32.8425	14,925,000	2,000,000	1,000,000	11,925,000	102-2	36.2452	17,200,000	2,000,000	1,000,000	14,200,000
84E1	32.8425	14,917,000	2,000,000	1,000,000	11,917,000	108	30.3893	12,852,000	2,000,000	1,000,000	9,852,000
84F	38.1121	16,312,000	2,000,000	1,000,000	13,312,000	112T	40.8094	17,993,000	2,000,000	1,000,000	14,993,000
84F1	38.1121	16,305,000	2,000,000	1,000,000	13,305,000	115	42.2745	21,132,000	2,000,000	1,000,000	18,132,000
84G	30.2670	14,700,000	2,000,000	1,000,000	11,700,000	115-1	42.2745	21,132,000	2,000,000	1,000,000	18,132,000
84G1	27.3545	14,299,000	2,000,000	1,000,000	11,299,000	115-2	40.4725	20,682,000	2,000,000	1,000,000	17,682,000
84H	34.1840	16,064,000	2,000,000	1,000,000	13,064,000	115-3	40.4725	20,682,000	2,000,000	1,000,000	17,682,000
86A	38.8550	16,453,000	2,000,000	1,000,000	13,453,000	113T	44.6492	18,477,000	2,000,000	1,000,000	15,477,000
86A1	38.8550	15,642,000	2,000,000	1,000,000	12,642,000	113T1	44.6492	18,477,000	2,000,000	1,000,000	15,477,000
86B	27.9283	12,391,000	2,000,000	1,000,000	9,391,000	114	30.7974	17,801,000	2,000,000	1,000,000	14,801,000
86B1	27.9283	12,383,000	2,000,000	1,000,000	9,383,000	121P	50.8415	22,065,000	2,000,000	1,000,000	19,065,000
86C	28.6627	12,961,000	2,000,000	1,000,000	9,961,000	121P1	49.9040	21,798,000	2,000,000	1,000,000	18,798,000
86C1	28.6627	12,953,000	2,000,000	1,000,000	9,953,000	120	37.4436	18,527,000	2,000,000	1,000,000	15,527,000
87	28.6545	12,204,000	2,000,000	1,000,000	9,204,000	133	21.6009	14,200,000	2,000,000	1,000,000	11,200,000
87-1	28.6545	12,196,000	2,000,000	1,000,000	9,196,000	143S	35.7126	20,453,000	2,000,000	1,000,000	17,453,000
88	27.9875	12,112,000	2,000,000	1,000,000	9,112,000	148T	47.7643	22,047,000	2,000,000	1,000,000	19,047,000
88-1	27.9875	12,104,000	2,000,000	1,000,000	9,104,000	148T1	47.7643	21,824,000	2,000,000	1,000,000	18,824,000
92	28.1753	12,894,000	2,000,000	1,000,000	9,894,000	149T	45.9538	24,236,000	2,000,000	1,000,000	21,236,000
97T	41.1728	18,366,000	2,000,000	1,000,000	15,366,000	158P	60.4409	25,360,000	2,000,000	1,000,000	22,360,000
97T1	41.1728	18,358,000	2,000,000	1,000,000	15,358,000						

■ 발코니확장 납부계좌

금융기관	계좌구분	계좌번호	예금주
NH농협은행	발코니확장대금	317-0013-7743-71	㈜제일풍경채

• 무통장 입금시 동 ·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람.

■ 유의사항
•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4호, 동법 제46조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 변경할 수 있으며, 발코니구조 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시 공개된 총금액으로 사업주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 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음. (설비 및 인테리어 설계상 연관되어 있어 개별 품목별 신청이 불가함)
• 시공상의 문제로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기간 내에 발코니확장 여부를 선택하여 발코니 확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자재발주 등의 문제로 변경계약이 불가능함.
• 발코니확장 비용 및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 품귀 또는 신제품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마다 수전, 드레인, 선홈통의 설치 유무가 다르며, 위치 및 개수는 변경될 수 있음. •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인접 상층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발코니 확장공사를 선택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 하드웨어)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샤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보수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 발코니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음.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며, 발코니 확장시 동일 주택형이라도 해당 동 · 호에 따라 확장구간의 폭 및 깊이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예 : 옆세대 비확장시 단열에 의해 내부벽이 단열두께만큼 돌출될 수 있음)할 수 있고, 확장된 발코니 일부벽체는 단열을 위하여 분양안내서 그림보다 다소 두꺼워질 수 있음.
• 발코니 확장공사로 인한 면적 및 마감형태(돌출/변형) 등이 각 호별로 다를 수 있으며, 구조 및 기능 만족을 위하여 마감재료의 특성과 규칙이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발코니 외부 전면창 설치 및 발코니 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음.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하부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음.
• 비확장 세대의 경우 등기구의 개수 및 램프의 개수가 확장형에 비해 줄어들거나 크기가 축소될 수 있음.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 시공함으로서 입주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입주자에게 불만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바람.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으로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가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다면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바람.
• 발코니 비확장 선택세대가 입주 후 개별적으로 발코니 확장공사를 하여 발생되는 마감재 오염 및 훼손, 결로, 단열의 등 문제는 당사와 무관한 사항이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 및 발코니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등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으며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함. • 발코니 확장면적은 발코니면적 산정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면적이므로, 실사용면적과 상이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시 관련법상 내실발코니가 대피공간으로 설치될 수 있고 발코니 창호공사, 발코니 확장공사 및 마감자재의 내용 등은 주택형별로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람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나 비확장형 선택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라며,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시공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발코니확장 공사계약을 선택한 경우 발코니 확장공사 계약에 정하는 조건에 따라 일체의 계약변경[신규계약 체결 및 해지(해제)]이 불가능 하며, 분양권 전매시 전매수인은 기존 발코니 확장공사 계약을 승계 하여야 함.
• 발코니 확장세대에서 비확장으로 남아있는 발코니샤시는 단창으로 설치되며,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않음.(결로 및 곰팡이 등의 하자발생 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됨)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경우 난방 장비용량 증설에 따른 비용 및 난방부담금 등은 입주시점에 아파트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추가부담 하여야 함.

▣ 추가선택품목(무상 및 유상옵션) (단위 : 원, VAT 포함)

타입	종류	품목	제품명	옵션금액	계약금 계약시	중도금 2019.04.10	잔금 입주지정일	업체명
전타입	빌트인 냉장고	TBI디스펜서형	R-L692JYS	6,581,000	1,000,000	1,000,000	4,581,000	LG전자

▣ 시스템 에어컨 설치공사 (단위 : 원, VAT 포함)

주택형(㎡)	타입	설치 위치	설치개소	설치금액	계약금 계약시	중도금 2019.04.10	잔금 입주지정일(90%)
84㎡~108㎡	84A, 84B, 84C, 84D, 84E, 84F, 84G, 84H, 86A, 86B, 86C, 87, 88, 92, 97T, 97A, 97B, 97C, 97D, 98, 99, 100A, 100B, 102, 108	거실+주방+안방	3개소	4,500,000	1,000,000	1,000,000	2,500,000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	5개소	7,000,000	1,000,000	1,000,000	5,000,000
112㎡~143㎡	112T, 115, 113T, 114, 121P, 120, 133, 143S	거실+주방+안방	3개소	4,500,000	1,000,000	1,000,000	2,500,000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침실3	6개소	8,100,000	1,000,000	1,000,000	6,100,000
148㎡~158㎡	148T, 149T, 158P	거실+주방+안방	3개소	4,900,000	1,000,000	1,000,000	2,900,000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침실3+가족실	7개소	10,000,000	1,000,000	1,000,000	8,000,000

■ 시스템 에어컨 및 플러스 옵션 납부계좌

금융기관	계좌구분	계좌번호	예금주
NH농협은행	옵션 계약(냉장고, 시스템에어컨)	317-0013-7743-71	㈜제일풍경채

• 무통장 입금시 동 ·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람.

■ 추가선택품목 유의사항
• 추가선택품목은 아파트 공급계약과 별도로서, 계약주체는 본 사업의 시공사인 제일건설 주식회사이며, 계약일정은 추후 별도로 공지함.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4조,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제4조에 의거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임.
• 추가선택품목의 설치여부에 대하여 입주자모집공고 시 입주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입주자와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추가 선택품목의 구입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추가선택품목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본 공고 외 추가선택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름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 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선택품목 계약이 불가하며, 계약체결 후 해약은 공사의 착수시점 이후 불가함. • 상기 추가선택품목은 발코니확장 선택시 유상옵션이며, 발코니 비확장세대는 선택 불가함.
• 상기 추가선택품목은 본 아파트의 디자인 컨셉에 따른 품목으로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를 요구 할 수 없으니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반드시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 체결하시기 바람.
• 상기 추가선택품목의 가격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시스템 에어컨은 설치의 특성상 발코니 확장 계약시에만 선택할 수 있으며, 일정 시점 이후 시공을 위해 자재를 발주해야 하므로 계약 후 선택사항 변경 및 해제가 불가함.
• 시스템 에어컨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생산단종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 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시스템 에어컨의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음.(계약전 위치 확인 요망) • 시스템 에어컨의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시스템 에어컨 판매가는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
• 시스템 에어컨 선택 옵션에 따라서 시스템 에어컨 수량 및 냉방 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임.
• 시스템 에어컨 옵션 미선택시 매립 냉매배관은 거실(스탠드형), 안방 및 각 침실(벽걸이형)에 기본 설치됨.
• 시스템 에어컨 기본옵션 선택시 시스템에어컨이 설치되는 거실 및 안방에 매립냉매배관 및 전원선이 설치되지 않으며, 시스템 에어컨 전실옵션 선택시 시스템에어컨이 설치되는 거실, 안방 및 침실 등에 매립냉매배관 및 전원선 전체가 설치되지 않음. • 상기 시스템에어컨 설치금액은 매립냉매배관 및 전원선 미시공 등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 품목의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시스템에어컨 선택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음. • 시스템 에어컨은 냉방전용 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시스템 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가 변경될 수 있음. • 시스템 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
• 시스템 에어컨 실외기는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됨.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선택사항 옵션계약이 불가하며,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기간 내에 옵션계약을 체결할 예정임.
•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 질 수 있음.
• 세대내 제공되는 시스템 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으로 제공되며, 추후 유선 컨트롤러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시스템 에어컨은 편의상 냉난방용으로 설치하였으며, 본 공사 시 적용될 시스템에어컨은 난방기능이 없음.

▣ 공동주택 마이너스 옵션
■ 공통
• 「주택법」제54조제1항제2호나목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장판, 벽지, 조명기구, 위생기기, 타일, 창호, 주방기구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 시공할 품목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 옵션 품목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범위 내에서 사업 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단,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함)
• 공동주택의 단위세대 내부 마감재중 일부를 선정하여 제시한 마이너스옵션 품목에 대하여 계약자가 세대별 일괄신청시에 해당시설 및 비용을 제외한 후 공급받을 수 있으며, 아래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단,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함)
• 본 아파트는 국토교통부의 「동별 배정순서에 의한 기본선택품목제도 시행 시 입주자 선정절차」 중 당첨자선정 발표 시 동 · 호까지 배정한 후, 당첨자가 계약체결시 해당 동 · 호에 대하여 기본선택품목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음.

■ 마이너스옵션 적용품목 및 범위

품 목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기본제공품목
바닥재	〈강마루〉거실, 주방, 복도, 안방, 침실, 드레스룸, 〈타일, 대리석〉현관, 〈타일〉발코니, 실외기실, 대피공간바닥	바닥난방, 발코니바닥 방수, 발코니바닥 배수슬래브
벽, 천정	벽지 및 천장지, 벽 및 천장 도장, 거실아트월, 주방벽타일, 몰딩, 우물천정 인테리어 마감, 전동빨래건조대, 통합무선AP, 가변형벽체	벽 : 단열+석고보드 / 미장 / 콘크리트 면처리 천장 : 천장틀, 석고보드, 커텐박스
조명기구	부착형 조명기구 및 욕실 및 주방조명기구	매입형 조명기구(욕실, 주방조명기구제외), 배선 스위치 및 콘센트류(가변형벽체부위 제외-골조부분만 시공)
욕실	타일(바닥, 벽), 천정, 젠다이(인조석/천연석), 재료분리대, 욕조하부틀, 코킹, 바닥배수구, 욕실환풍기, 스위치, 콘센트, 욕실장, 샤워부스, 욕실폰, 욕조, 양변기, 세면기, 수전류, 비데, 액세서리류	방수(바닥, 벽체), 설비배관(급수, 급탕 등 매립배관), 바닥난방배관 욕실 배기덕트, 바닥배수 슬래브, 전기, 통신배관배선
주방가구	주방TV 상,하부장, 판넬, 가구도어(상판 및 액세서리포함), 벽타일, 주방수전, 씽크볼, 시스템선반, 가스쿡탑, 렌지후드, 음식물탈수기, 기타 악세서리류	설비배관, 전기배관, 통신배관, 실내급배기 환기설비 기기(배관), 배관/배선(라디오폰 등의 전기입선), 주방배기덕트
창호	문틀, 문짝, 도어락 및 경첩 등 하드웨어 일체, 문선, 디지털도어락	목창호 가틀, 문틀사춤, 플라스틱 창호 창틀,창짝(하드웨어 제외), 현관방화문, 대피공간 방화문
가구 및 기타사항	신발장, 드레스룸, 화장대, 침실붙박이장, 세탁실 및 발코니수전, 복도창고 가구류, 팬트리가구, 시스템선반, 현관자석감지기, 거실동체감지기, 자동식소화기	홈네트워크 월패드, 현관도어폰, 각실온도조절기, 실내환기조절기, 에어컨 냉매배관(거실, 안방)

※ 상기 품목은 주택형(타입)별로 상이하며, 상기 명시되지 않은 기본선택품목 등은 견본주택 내 기본설치 품목에 준함.

■ 마이너스옵션 금액 (단위 : 원, VAT 포함)

구분	84A	84B	84C	84D	84E	84F	84G	84H	86A	86B	86C	87
금액	₩27,893,000	₩28,280,000	₩28,730,000	₩28,645,000	₩28,679,000	₩28,559,000	₩27,223,000	₩27,198,000	₩30,069,000	₩30,173,000	₩30,259,000	₩30,551,000
구분	88	92	97T	97A	97B	97C	97D	98	99	100A	100B	102
금액	₩30,704,000	₩31,456,000	₩32,214,000	₩32,882,000	₩32,176,000	₩32,025,000	₩34,334,000	₩34,093,000	₩32,876,000	₩33,089,000	₩33,134,000	₩33,716,000
구분	108	112T	115	113T	114	121P	120T	133	143S	148T	149T	158P
금액	₩37,256,000	₩36,484,000	₩39,112,000	₩36,539,000	₩38,859,000	₩41,800,000	₩40,669,000	₩44,360,000	₩49,129,000	₩47,635,000	₩47,556,000	₩52,849,000

※ 상기 금액에는 취득세 등이 미포함된 가격이며, 기본형 분양가에서 상기 옵션별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급가격으로 함.

■ 마이너스 옵션 선택 및 시공을 위한 유의사항
• 배선 기구류 위치 등은 기존 위치와 동일하며, 기타 시공조건(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 두께 등)은 타입별 마이너스 옵션 미선택 기준으로 시공됨.
• 마이너스 옵션은 설계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 중 선택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임. (단, 상기 마이너스 옵션계약은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로 선택하여야 함) •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 이후에는 자재 발주문제로 인하여 마이너스 옵션 추가신청 및 변경이 불가능함.
•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각 세대별 공사는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 납부 이후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공사가 가능하오니 이점 감안하시어 품목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라며, 공사기한은 소음, 분진 등의 문제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제3조제1항 규정에 따른 최초 입주가능일(입주지정일)부터 60일 이내에 법규정을 준수하여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의 시공 및 설치를 완료하여야 함.
• 기본형 계약 이후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제8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금액(일천오백만원)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하며, 그 외의 경우도 품질확보 및 하자보수책임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구비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여야 함. • 하자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자가 시공하더라도 하자이행보증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기시공 되어진 통신기기, 난방조절기 등이 개별 인테리어공사 과정에서 탈부착 됨으로 인하여 초기 세팅값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초 입주가능일(입주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개별공사를 완료 후 정상작동 유무를 확인하여야 함. 또한 사업주체가 시공한 부분의 정상작동 여부에 대하여 사업주체 측과 입주자가 공동으로 확인하고 확약서를 작성함.
• 마이너스 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 「건축법」제52조, 「건축법 시행령」제61조, 「건축물의 피난 및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24조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 품목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으로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사업주체 시공분은 적법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마이너스 옵션은 별도 동을 지정하지 않으니, 마이너스 옵션 선택을 희망하실 경우는 당첨된 동 · 호수에 마이너스 옵션이 적용된 분양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 세대의 동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음. • 마이너스 옵션 계약세대는 계약시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 시공, 설치 관련 확약서를 작성하셔야 함.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한 계약자의 분양대금 납부 비율은 일반분양 계약자와 동일함.(마이너스 옵션 계약에 따른 분양대금 감소분은 분양대금 납부 비율에 안분하여 차감 적용함)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한 세대는 발코니 확장공사(별도품목 시공) 신청이 불가함.(마이너스 옵션 신청 이후 계약사항의 변경이 불가하오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발코니 오수드레인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물사용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을 수 있음.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설비수전류 액세서리(절수페달 등)도 시공되지 않음.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에도 향후 계약자가 별도의 발코니 확장공사를 할 경우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며, 개별 시공할 경우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마감자재 선택이 자유로우나, 일부 자재선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마이너스 옵션 부분 공사시 기시공된 소방, 전기,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시설, 기타 공사시설물, 건물의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을 훼손시에는 원상복구 및 배상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음.
• 입주자가 가변식 칸막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24조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함.
• 마감두께를 감안하여 벽체, 창호 및 바닥에는 틈새나 여유공간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기둥 및 벽체에는 마감을 위해 별도 바탕처리가 없음.

Ⅷ 기 타

▣ 유의사항
■ 주택소유에 따른 유의사항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세대주,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됨.
•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등본상 처리일) 기준임.
• 주택 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됨.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됨.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사업주체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따라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① 사용승인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② 전용면적 85㎡ 이하의 단독주택
③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전용면적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소유자는 제외)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이 있을 경우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시 유주택자로 간주함)
–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 또는 주택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청약 및 계약관련 유의사항(경과기간 및 요건 등)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경우 해당구간의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주택공급 신청서상 단말기로 인자된 거주지역명을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역과 반드시 대조 확인하시기 바람.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고,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여야 함.
• 본 아파트의 당첨자는 향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국민주택 또는 민영주택에 청약할 경우 일정기간 청약자격이 제한될 수 있음.
• 순위 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에는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나 정정은 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함.

■ 기타 유의사항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않으며,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으로 기재하오니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인지하시기 바람.
• 보존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
• 공급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로 인한 차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음.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 각종 광고 및 홈페이지 V.R, 홍보물(카탈로그, 전단, 안내문 등)[이하 '각종 광고 및 홍보물'] 등 홍보과정에서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홍보한 내용은 추후 인허가 과정이나 관계기관의 사정,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될 수 있으며, 홍보물 제작과정에서 오기 · 오탈자로 인하여 잘못 기재 될 수 있으니 견본주택에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람. •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제작 · 배포된 홍보물 등은 사전 홍보시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니 견본주택을 확인하시어 계약 시 착오 없으시길 바람.
• 각종 광고 및 홍보물,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심의의 결과에 따라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이미지 컷 및 전시모형은 전 세대 발코니확장을 감안하여 작성되었음. • 각종 광고 및 홍보물 등과 견본주택 내 전시모형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 연출한 것으로 식재 및 색상, 시설물 등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람.
• 사전에 사업부지 내 · 외 현장을 필히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아파트 입주자의 하자보수 관련 일체의 입주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제36조, 제37조, 제38조에 따라 적용됨.
•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을 위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합리적인 시공을 위하여 관련법령 내 적합한 세대 내 · 외부 설계변경 등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진행될 수 있음.
• 「주택법 시행규칙」제13조제5항에 의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 · 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 본 아파트의 명칭, 외부색채와 외부상세계획 등은 인허가, 경관/색채심의 및 법규의 변경, 시공사 브랜드 변경, 디자인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지붕층 및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항공장애등, 야간경관용 조명, 위성안테나, 피뢰침, 환기용 벤틸레이터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단지 내 부대시설은 사업주체가 설치해주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함.
• 단지 내 부대시설은 304동하부 에듀스테이션(공방,작은도서관)등은 건축심의 의견으로 외부인에게 개방하게 될 수 있으며 입주자대표협의회 등에서 결정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시행사, 시공사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당 단지는 건축법, 주택법 등의 관계법령을 준수하였으며, 단지 내 · 외 인접한 건물들과 건물 입면의 돌출발코니, 입면 장식, 각종 시설물 등으로 인하여 일조권 및 조망 등의 환경권 침해가 동 · 호수별 위치에 따라 상이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시행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내에는 자전거 보관소, 쓰레기 분리수거장, 재활용품창고, 기계전기실 급배기구, DRY AREA(채광,환기,방습 등을 위하여 지하에서 지상으로 낸 통풍구) 쓰레기 투입구(자동크린넷), 근린생활 냉, 난방용 실외기 및 환기설비 등이 설치될 예정으로 계약시 위치를 확인하여야하며 설치결과에 따라 일부 저층세대는 조망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단, 위치는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인허가 진행 및 본 공사 시 외관개선을 위하여 아파트 및 부대시설의 외관디자인(입면 마감재료 및 색채, 측벽디자인, 옥탑장식물, 몰딩, 창틀 모양 및 색상 등), 필로티, 동현관, 캐노피, 지하출입구, 난간 디테일, 문주, 천창, DA, 조경패턴 등 외부 시설물 등은 관계기관의 협의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음.
• 지하주차장 출입구와 인접한 저층 세대는 지하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소음에 의하여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준공 전 · 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 · 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 및 타사 또는 타 단지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부대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 계약세대가 속한 층 및 향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다를 수 있으며, 마감재 내용은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동 조합으로 인한 요철 및 입면디자인으로 인한 장식으로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일부 침해될 수 있음. • 조감도, 세대 평면도,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전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마감재의 사양은 타입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에서 분양상담을 통해 정확하게 인지하신 후 분양신청 하시기 바람. • 각종 인증과 관련하여 인증서 및 관련도면에 첨부된 자재 및 공법은 실 현장 여건 및 자재수급 여부에 따라 동급정도 또는 동급 이상 자재 및 공법으로 대체될 수 있음.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 공기질 측정결과를 주민 입주 3일전부터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임.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일부세대는 공사 중에 고품질 시공을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해당 세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 본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당첨자 계약 전 전매하거나 계약 후 신청서의 내용 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시에는 법에 따라 처벌됨.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 당첨자가 계약 체결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당사와 무관한 사항임.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 주민공동시설,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 모형의 조경, 식재, 주변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향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세대 발코니내 대피공간에는 화재시 외부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그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람.
• 본 주택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계약자는 계약시 현재 조건을 확인하여 계약하였으므로 계약조건 보장 및 변경 등의 요구를 하는 것은 불가함.
• 대지면적은 아래와 같음.

구분	전체면적	공동주택면적	상가면적	건폐율	용적률
면적(㎡)	40,109.0000㎡	36,098.1000㎡	4,010.9000㎡	33.30%	270.33%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름.

■ 택지개발지구여건 및 단지외부여건
• 공동주택 단지의 명칭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명칭제정 자문위원회"에서 2-4생활권은 "나릿재마을"로 잠정 결정하였으나 추후 변경될 수 있고, 분양시 입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동,호수의 표기도 또한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공부상 주소체계에는 아파트 브랜드명이 표시되지 않음. • 도로 등 공공공간과 접한 부지 내 설치하는 보도블록, 보행등, 맨홀 등은 「행복도시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에 따라 설치되었음.
• 당해 지구내 기반 시설(도로, 상 · 하수도, 공원 등)은 국가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자체가 설치하는 사항으로 개발계획 변경 등 사유로 사업 추진 중 일부 변경, 취소,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시기가 지연될 수 있으며, 시행사 및 시공사의 귀책 사유가 없음. • 당해 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은 개발(실시)계획,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주변사업지 향후계획, 교통영향평가 변경 등에 따라 준공시 모형 및 CG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당해 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서 향후 지구 내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최초 개발계획도면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본 사업부지 경계에 구조물 등이 설치 또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당해 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각종 평가(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분석, 교통영향분석 · 개선대책) 내용 중 당해 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에 의하여 설치되는 도로, 공개공지, 전면공지, 공공조경, 공공보행통로 등의 개설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음, 기타 외부인 통행 등에 대하여 입주자는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당해 지구내 일부 시설 · 확장 도로는 인 · 허가 추진 일정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사의 시공 범위가 아님.(CG 및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 단지 외부의 공원 및 공공공지 등 주변 공공시설의 계획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개발 및 실시계획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종 교육시설은 토지이용계획 및 관할교육청의 학교설립 일정 조정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관할교육청에 직접 문의 확인하여야 함.
• 단지 인근에 상업/업무용지, 공공공지, 광장, 공공청사용지, 공원 및 녹지 등에서 발생될 수 있는 환경(간섭, 소음)오염 및 유해시설 등은 공동주택 주거환경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계약자는 현장 등을 확인한 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 단지 북측 : 주상복합(HC1)+24.5M도로, 동측 : 학교+공공청사+27.5M도로, 서측 : 상업업무용지+20M도로, 남측 : 주상복합(HC3)+24.5M도로가 위치 함. • 사업부지 경계부에는 생울타리가 일부 설치될 수 있으며, 행복도시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따라 물리적으로 담장을 설치할 수 없음.
• 당해 지구내 일부 상업시설 및 편의시설은 용지매각 일정에 따라 주민 입주 후 설치될 수 있음. • 단지 주변에는 전력 지중화용 지상기기 및 노상시설물(전주, 가로등 등)이 설치될 수 있음.
• 당해지구 내부와 인근에는 고압, 지하차도, 송전시설, 전기공급설비, 열공급설비(지역난방), 가스공급시설, 자동크린넷 집하장 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설치 위치 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또한 추가로 시공 예정인 시설물들의 위치는 향후 개발계획, 실시계획변경 시 조정 될 수 있음. • 본 단지 주변 도시계획도로는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도로 폭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주변 아파트 및 건축물의 신축과 주변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단지 내 아파트 동별, 향별, 층별 위치에 따라 일조, 조망, 소음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시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 단지 주변의 버스정류장은 현재 교통계획에 의해 표현되었으며, 향후 계획의 변경, 취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당해 지구내 대중교통(시내버스 등)의 운행시기, 운행, 관리 등은 지자체 및 위탁업체에서 결정하는 사항으로서 당사와 무관하며, 노선결정, 운영시기 차이 등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하여 당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관련사항은 해당 지자체 및 위탁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람. • 당해 지구내 학교 설립 계획은 향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설립승인) 및 의회승인 결과, 교육여건 변화에 따라 설립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학교 부지가 취소 및 위치 · 면적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입주자 및 당사와 무관함. • 본 공동주택(HC2블록:771세대) 사업으로 유입되는 학생은 (초)가칭 나성초, (중)2학군, (고)세종시 전체를 학군으로 하며,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교육청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학교배정은 세종시교육청 관할사항으로 사업주체와는 무관함. • 사전에 사업부지 내 · 외 현장을 필히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지구단위계획 및 인허가를 득한 배치의 주출입구를 제외한 단지외부로 연결되는 보행 출입구는 현장상황 및 기반시설 관리주체와 협의결과에 따라 출입이 불가할 수 있음.
• 각종 광고 및 홍보물 등에 표시된 각종시설(기반시설, 도로망 등)은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허가관청 및 시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행복도시 내 유해시설 위치는 청약 및 계약 시 견본주택 및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주변 혐오시설의 위치 및 규모,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의 책임이므로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단지 남측과 북측에 주거차량 진출입구가 있으며, 비주거차량 출입구(상가용)와는 구별되어 있음.
• 단지 남측 주거차량출입구는 진입2차로, 진출1차로+안전지대(안전지대는 통학 및 학원차량회차로)로 형성되며, 버스쉘터가 설치됨. • 단지 북측 주거차량출입구는 진입2차로, 진출1차로로 형성되며, 버스쉘터가 미설치됨.
• 단지 남측 주거차량 진입구에서 좌회전 진출시는 남측HC3BL 앞 원형교차로를 경유하여 가능하며, 진출입구 진입시에는 학교 및 청사에 접해있는 27.5m도로에서만 가능함.

■ 단지내부여건
• 단지 내부여건을 필히 확인하신 후 청약/계약에 임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최고층수는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지상 6~37층 규모임.
• 지붕은 평지붕이며, 타워주동은 옥탑 장식 구조물,방송통신장비,소방수등이 설치됨. • 난방방식은 지역난방이며,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기둥+벽식 구조로 시공됨.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최종 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함.
• 본 아파트는 고층 탑상형+판상형 주동타입과 저층 탑상형+판상형 주동타입이 혼재하며, 단지배치 특성상 동별, 향별, 층별, 위치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 · 층에 따라 일조권, 일조량, 조망권, 환경권에 차이가 있으며, 일부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내 비치된 설계도서 및 참고도서, 분양홍보물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람. • 본 아파트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함.
• 미술장식품 설치 위치는 미술장식품 설치계획 심의에서 최종 결정되며, 심의 과정에서 그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행복도시 건설청의 심의사항이므로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주출입구 인근에 경비실이 설치될 예정이며 위치 등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301~309동은 저층 5개층에 지구단위계획에 의거하여 건강계단 및 부대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인접한 세대 등은 해당 시설 이용자의 통행 및 이용으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내 전시모형 및 사업승인 도면을 확인하시기 바람. • 피로티 위층 세대는 바닥 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음.
• 각 동 피로티의 높이는 피로티의 위치별로 상이하오니 모델하우스 현장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행정중심복합도시 지구단위지침 등에 의거하여 신재생에너지를 일정 비율 설치하여야 하는바, 아파트, 근생시설은 지열 설비가 지하층에 설치되며, 공동주택 상부 지붕층에 태양광집광판이 설치되며, 태양광패널에 의한 빛반사 등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청약 및 계약전 이를 확인하시기 바람. • 근린생활시설의 지붕층 일부에는 근생용 냉각탑 및 실외기, 주방배기휀등이 집중 설치되어, 이에 인접한 저층 세대 등은 장비의 수증기, 소음등의 편의시설물로인한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청약 및 계약전 이를 확인하시기 바람.
• 단지 내 지하에는 전기실/펌프실/발전기실/저수조 등이 설치되며 발전기의 주기적 가동 및 비상 가동으로 인해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음.
• 301~309동 저층주거의 일부 세대는 단지내 보도, 데크보행로, 쓰레기투입구, 재활용보관소, 자전거보관소, DA, 채광창, 등의 설치 인하여 소음, 분진, 사생활 침해 등의 영향으로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 모형도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각 동 지하에 설치되는 재활용창고는 비상창고 용도이며, 별도의 출입문이 설치되지 않음. •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상가)의 대지는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아파트의 대지 일부(주출입구 및 차로)는 근린생활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및 차량 통행 등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음. • 지구단위상에 공공보행통로, 단지내 보행통로가 계획되어 있어 외부인이 출입 할수 있습니다.
• 단지 동측에 초등학교와 연결되는 입체 공공보행통로가 계획되어 있고 추후 LH디자인에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동측, 북측(306~309동)에 공개공지가 계획되어 있으므로 인접한 세대는 소음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인지 후 계약하시기 바람. • 단지 301~305동, 309동 하부에 상가가 계획되어 있어 인접 세대는 소음, 냉각탑, 실외기실 등 관련 사항을 확인 하시기 바람. • 단지 302, 304, 307, 308동 부대시설이 계획되어 있어 인접 세대는 소음, 실외기실 등 관련 사항을 확인 하시기 바람. • 본 아파트 단지 내 건립되는 보도 · 조경 · 주차장 등의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해야 하며, 이 부분에 대하여 점유 등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음.

■ 공용부 유의사항
• 주동의 피로티 공간은 보행통로 또는 공용부분으로 개인이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음.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전실)의 공간은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로 구조변경이 금지되며, 공용부위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동별 · 타입별로 면적의 차이가 있음.
• 301동은 근생과 접해 있어 저층부에 구조상 계단실 창호가 설치되지 않는 구조이며, 301~309동은 각 3층마다 1개소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된 개폐창호가 설치됨. [방충망 미 설치]
• 301~309동 엘리베이터 홀 창호는 전체 고정 창호로 설치되나 각층 1개소에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된 개폐창호가 설치됨. [방충망 미 설치]
• 301~309동 저층부 5개층에 설치되는 건강계단은 주동의 엘리베이터 홀 및 계단실과 별도로 설치되는 주민공동 시설물이며 주동의 위치에 따라 구조가 상이할 수 있음.
• 301~309동 저층부 일부(지하2~지상5층) 및 고층부 일부 엘리베이터홀에는 초고층 건축물 연돌효과 저감을 위한 방풍실이 추가될 수 있으며, 기준층 엘리베이터홀의 구조와 상이할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전 이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지붕층에는 소화펌프가 설치되므로 기계장비의 가동시 소음, 진동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음.
• 세대 내 동체감지시스템은 1층, 2층 및 최상층은 발코니, 기준층은 거실에만 설치됨. • 각 동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와 엘리베이터 기계실로 인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302,304,307,308동 등 일부세대는 엘리베이터와 접해 있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아파트1층 제연설비를 위한 제연팬 및 외기취입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가동시 소음 ·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아파트 지하층 일부에는 재활용창고(개방형창고) 제공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운영 및 이용, 시설에 대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협의회 등에서 결정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시행사, 시공사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무인택배시스템이 301~309동은 1개동당 1개소씩 지하 주동출입구 인근에 설치되며 이용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최상층 및 중간 세대의 경우 옥상에 설치되는 무동력 흡출기에 근접하여 소음, 냄새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경로당, 보육시설 등의 외부 또는 지붕층에 에어컨 및 냉 · 난방기 실외기가 설치되어 가동시 소음 · 먼지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각 동 지하1층에 자전거보관대가 설치되며, 별도의 구조물은 설치되지 않음.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은 주거용 8대(급속2대, 완속6대)가 설치되며, 302동 및 304동 주변에 4대씩 설치될 예정임. (상가용 별도)

■ 단지내도로, 주차, 외부연결
• 단지내 비상차로 및 보도 포장의 패턴 및 색채, 선형 등은 단지내 환경 개선을 위하여 일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모형 및 CG에 표현된 계획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환기구 및 채광을 위한 탑라이트, 선큰 등이 일부 동의 인근에 설치되며 일부 인접세대는 소음 및 환기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모형도 등에서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람.
• 단지 내 비상차로는 볼라드가 설치되며, 평상시 이용에 제한이 있음. • 지하주차장은 지하 2개층이며, 지하주차장 1층 출입 램프의 높이는 2.9M임.
• 지하주차장 출입구는 단지 남측에 아파트 전용 지하주차장 출입구 1개소, 북측에 아파트 전용 지하주차장 출입구 1개소, 근린생활시설 지하주차장 공용출입구 1개소가 설치되며, 아파트 전용 지하주차장 출입구램프에는 지붕구조물이 설치되고, 근린생활시설 지하주차장 출입구는 구조물이 설치되지 않음. • 단지내외 도로(지상/지하주차장 램프 포함) 및 비상차로 등에 인접한 일부 세대는 차량 소음, 분진 및 불빛 등에 의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 비상차로 및 포장구간 중 일부는 화재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비상차량의 정차위치로 표기/활용될 수 있음. • 단지배치 및 구조상 전체세대는 이삿짐 운반시 엘리베이터로만 가능함.
• 단지내 조경, 식재, 포장계획은 각종 인 · 허가 또는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재료 · 형태 · 색채 ·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내 외부시설물
• 각 동의 저층부 세대는 가로등, 보안등 및 기타 유사 시설물로 인한 야간 조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어린이놀이터, 보육시설,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에 인접한 일부 세대에는 소음, 분진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음. • 본 아파트 단지의 보육시설,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에 근접하여 배치된 일부 세대는 소음, 냄새, 진동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본 아파트 단지 내에는 공공장소인 필로티, 어린이놀이터, 쓰레기투입구 및 재활용품집적소, 기계 전기실 급배기구, DRY AREA(채광, 환기, 방습 등을 위해 지하에서 지상으로 낸 통풍구), 지하주차장 출입구 및 계단실, 미술장식품 등이 설치될 예정으로 계약시 위치를 확인하여야하며 설치결과에 따라 일부 저층세대는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단지주출입구 및 경비실, D.A, 구조물, 저층부마감, 동별 출입구 디자인 및 장식물, 단지내부 도로 포장재 및 난간대 등 모든 외부 환경 시설물은 세부적인 디자인 작업 진행 및 현장 여건에 따라 실시공시 위치 및 크기, 색상, 재질, 형태 등이 조정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옥외보안등 등 각종 조명 및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보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내 쓰레기 투입구 및 재활용 보관소는 입주민의 쓰레기 적치 및 계절에 따라 악취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람.
•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 할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 미술장식품은 미술장식품 설치 대상으로 미술장식품 심의시 위치가 결정되며, 장식품 설치로 인하여 일부세대의 조망권 등에 영향이 있을 수 있음. • 세종시 공공자전거 총 20대가 303동,308동 주변으로 설치예정이며, 추 후 변경될 수 있음.
• 남측 및 북측 주거차량출입구 등은 견본주택 모형을 참조하셔야 하며, 일반적인 직선형 게이트문주로 변경이 불가능하오니, 인지 후 계약하시기 바람.
• 301~309동 아파트 옥상에 태양광 집광판이 설치됨.(향후 설치수량, 용량, 위치 및 시스템은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302동 옥상층에 옥외안테나가 설치됨.
• 302동,304동,306동,309동 아파트 옥상층, 304동,308동 지하층 제연휀룸에 이동통신사 중계기가 설치됨.

■ 외관, 조명
• 본 단지의 건물외관(옥탑, 주동출입구), 아파트의 외부색채/패턴, 줄눈 패턴, 주현관, 피로티(내외부) 등은 분양이후 세부디자인 완료시 확정되며,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문주에 설치되는 브랜드의 명칭, 로고의 디자인, 규격, 설치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취향 민원에 의하여 변경사항이 될 수 없음.
• 본 아파트 옥탑층에는 의장용 구조물, 통신시설, 위성안테나, 경관조명,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 일부 고주파 소음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아파트 외벽 마감은 고층부는 페인트 및 금속재 판넬이 적용되며, 저층부는 금속재 판넬 및 페인트 등이 혼합 적용되며, 우천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으니 인지 후 계약하시기 바라며, 주동출입구 일부에만 석재가 적용되고, 적용부위 및 디자인은 현장 여건에 따라 CG 및 모형, 도면 등과 상이하게 조정될 수 있음. • 석공사에 쓰이는 자재는 천연석재일 경우 견본주택 및 각종 인쇄물에 표기된 재질 및 무늬(VEIN)는 천연석 특성 또는 제품간 차이로 인하여 색상 및 무늬가 서로 상이할 수 있음. • 단지내 설치되는 경관조명, 보안등, 수목등을 포함하는 일체의 조명 작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보수, 관리비용 일체(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보안등, 수목등 및 기타 조명에 의하여 야간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
⊙ 근린생활시설
• 본 단지는 주상복합 단지로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이 별도의 건축물이 아닌 통합형 계획된 구조이므로, 일부 단지내 도로, 보도 및 기타 공용시설물은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이용자가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근린생활시설(2개동)은 대로변에 연도형으로 위치하며,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따라 301~305동, 309동의 1층은 분양예정인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될 예정임.
• 근린생활시설에 인접한 세대의 경우, 근린생활시설의 용도에 따라 냄새, 소음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고, 일부 저층세대는 시각적 간섭으로 인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 및 변경, 시공 등은 아파트 계약자와 무관하게 진행 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은 아파트 단지 방향으로 창문 등이 설치될 수 있음.
⊙ 주민공동시설
• 부대시설 및 주민운동시설은 성능개선을 위하여 동일 면적 내에서 해당 용도의 구성 및 실 구획, 실면적 등은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음. • 보육시설, 경로당은 주방가구를 제외한 내부시설물, 비품, 인테리어 등은 설치되지 않음.
• 단지 내 부대시설에 설치되는 각종 가구, 기구, 비품류 등의 종류, 개수, 색채 및 형태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 후 이에 대한 운영 및 관리는 입주자 부담으로 직접 하여야 함.
• 피트니스 (체력단련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주민운동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체육시설업"(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 경영하는 업[業])으로 운영할 수 없음.
• 경로당 운영주체는 준공 사용검사 후 해당구청 · 면동(사무소)에 경로당 등록신고를 별도로 진행하여야 함. • 어린이집 운영주체는 어린이집 인가신청을 별도로 진행하여야 함.
• 301,303,305동 10,11층과 302,304,307,308동 31,32층은 커뮤니티센터가 배치되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부인의 출입 및 사용이 가능할 수 있으니 인지 후 계약바람.
• 304,307동 주변으로 선큰이 설치되며 별도의 지붕구조물은 설치되지 않음. • 304동 커뮤니티센터는 근린생활시설 2층과 연결되어 있음.
⊙ 지상 · 지하주차장
• 주차대수는 총 1,508대가 설치되며, 근린생활시설 주차 198대, 공동주택은 1,310대로 계획되어 있음. • 지하주차장의 주차구획 위치 및 대수는 조정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은 각동 지하층의 계단실, 엘리베이터홀과 직접 연결되는 주동통합형임. • 지하주차장 주차 구획 일부 구간은 승하차시 지하주차장 기둥과 간섭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이용시 동별로 주차대수가 일정하게 배정되지 않아 일부세대는 주차구획이 주동 출입구에서 거리가 먼 곳에 계획되어 이동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이용시 301, 305동 등 주동출입구 동선이 길어 이용에 불편함이 있을 수가 있음. • 지하층 특성상 각동을 연결하는 통로공간에 지하부분 계단실 등에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배수 트렌치는 구배가 없으며, 시공 허용오차로 인해 일부 구간에 물이 고일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진 · 출입 경사로는 동절기에 차량의 미끄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상부에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되어 설치됨. • 지하 1층에 설치되는 아파트용,발전기실,전기실,빗물저류조에 인접한 경우 장비류 가동시 미세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음.
• 지하 2층에 설치되는 아파트용, 근생용 발전기실, 기계실, 전기실, 펌프실에 인접한 경우 장비류 가동시 미세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음.
• 지하층 기계실, 발전기실, 펌프실 등 설비공간 및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하여 지상에 노출된 환기 시설물은 건축물의 특성상 필요한 시설로서 향후 환경개선을 위하여 형태와 위치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층 환기를 위해 지하주차장에 팬룸이 설치되며 팬룸 상부(옥외공간)에 환기탑(DA)이 설치되어 환기팬 가동시 소음 · 먼지 ·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조경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 시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일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고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이의 또는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각 동 주변에 화재 등의 응급상황 발생시 대피를 위하여 에어매트 설치공간이 조성되는 경우, 해당 자리에는 교목 및 관목 식재가 불가능함. • 각 동 전면에 조경수가 식재되며 저층세대의 경우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음.
• 각 동 전면에 조경시설물 및 벤치,그네 등이 배치될 수 있으며 저층세대의 경우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으니 인지 후 계약하시기 바람.
• 각 동 옥상조경은 유지관리로 인해 인조잔디로 변경 시공될 수 있으니 인지 후 계약하시기 바람.

■ 단위세대 및 마감재
• 각종 광고 및 홍보물, 견본주택 등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 및 사양이 변경될 수 있음.
• 각종 광고 및 홍보물, 견본주택 등에 적용된 마감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하므로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한 후 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람.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의 전용면적에는 발코니 초과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니,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같은 타입일지라도 입면 및 디자인에 따라 서비스면적이 차이가 있으니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 같은 타입일지라도 해당타입의 동호수에 따라 대피공간, 실외기실의 위치와 주방발코니의 구조가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으며 계약 전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음.
• 98,99,100A,100B,102,115타입 등의 다실선택형은 공간의 선호도를 제안했던 컨셉공간으로 입주자의 공간활용 선호도를 감안하여 선택사항으로 두었으며 선택에 따라 우물천정의 크기 및 조명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다용도실의 보조주방가구는 일부타입에 적용되며 이에 대해 계약 전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 측면발코니가 있는 세대의 경우 같은 타입이더라도 보, 기둥 등의 구조체로 인해 천정 마감 및 가구높이가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계약 전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 실제 시공시 현관 중문의 형태는 모델하우스에 설치된 중문과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각 타입별로 상이할 수 있음.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는 층별, 위치별로 같은 평형대이나 실사용면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아파트의 외관의 통일성 및 시각적 안정감 등을 위해 세대별 발코니 확장 또는 비확장 시 세대별로 설계되었으며,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는 경우 별도의 추가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함.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며, 기본형(비확장형) 선택 시에는 확장형 세대와 마감재 및 공간구성이 상이하고 협소하며, 제공품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됨.
• 견본주택 내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동질, 동가 이상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음. • 목창호류, 가구류, 석재류, 타일류,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시공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천연석의 자연스러운 패턴은 자재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이 균일하지 않아 본공사시 석재마다 차이가 날 수 있음.
• 본 공사시 단위세대에 설치되는 석재(욕실, 현관, 드레스룸)는 분할하여 시공되며 Join는 코킹처리 하여 마감 될수 있음. • 본 공사시 단위세대에 시공되는 타일공사 중 줄눈 나누기는 변경 될수 있음.
• 본 공사시 복도 및 거실에 설치되는 아트판 줄눈의 폭, 깊이는 변경 될수 있음. • 욕실세면대 상판 및 욕조주변 석재, 현관디딤판은 유지관리상 분할하여 시공되며, 욕조부위는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고, 석재 연결조인트는 실리콘 처리됨. • 주방하부장 상판 마감시 별도의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음. (주방상판 하부면) • 슬라이딩도어 시공시 벽체와의 틈새 및 흔들림, 이격이 있을 수 있으니 견본세대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람.
• 세대분전함 및 통신단자함의 시공위치는 견본세대 기준으로 설치되며, 추후 위치이동 및 변경은 불가함. • 주방싱크대 하부 걸레받이는 미적용 되어 별도의 커버마감은 없으니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람.
• 주방발코니의 구조는 ABS도어(폐쇄형, 유리 미설치)로 설치됨. • 아트월타일과 천정몰딩간의 접합부는 틈새가 발생할 수 있으며, 추 후 본 시공시 실리콘이 시공될 수 있음.
• 98타입 견본세대 신발장하부 조명은 장식용(DP)으로 본시공시 설치되지 않음. • 본시공시 현관디딤판과 마루 연결부위에는 조인트가 설치될 수 있음. • 부부욕실 하부장 내부에는 배관이 노출되어 시공됨.
• 세대내 타일부위는 떠붙임공법으로 시공되어 두드림시 소리가 발생할 수 있음, 아트월타일은 줄눈마감 없이 시공됨. • 거실 및 침실 등의 천장고는 실 시공 시 바닥재의 종류에 따라 법정 허용한도 내에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 욕실 문턱높이는 물넘침 등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욕실신발의 높이와 상관없음. (문 개폐시 신발 걸릴 수 있음) • 내부 일반가구, 주방가구 등의 마감자재 치수 변화가 있을 수 있음.
• 타일 줄눈위치 및 각 액세서리 위치는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현관 신발장, 붙박이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자재는 세대별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고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계규정에 의거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거 전 견본주택 내부의 평면설계 및 마감재 등을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임. •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 위치 및 개수는 모델하우스 소방 준공용으로 설치된 것으로 실제 세대 내에 설치되는 소화설비 등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어려운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 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한 사업 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위세대모형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될 마감재 등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마이너스옵션 품목, 전시품목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니, 본 공사 시에는 전시품목은 설치되지 않으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됨. • 견본주택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가구, 디스플레이 가전제품(TV, 세탁기,김치냉장고 등), 유상옵션 품목, 기타 전시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음. • 견본주택 및 도면에 표현된 바닥배수구, 선홈통, 온도조절기, 콘센트, 환기 디퓨져 등의 제품 사양 및 위치는 실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세대내부에 설치된 조명기구, 배선기구 및 전기 마감재 위치는 본시공시 변동될 수 있음.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 주민공동시설,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 모형의 조경, 식재, 주변환경 및 부지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인허가 도서에 기록된 각종 상세도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견본주택 세대 내부에 설치된 환기설비(환기캡 등)는 설계도면에 의거하여 설치하였으나, 실제 시공시 위치가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음. • 단위세대 빌트인가전 및 주방상판 등 마감재가 확장 또는 비확장형 여부에 따라 상이하오니 계약전 확인하시기 바람. • 단위세대 가구류는 확장 또는 비확장형 여부에 따라 설치 위치, 수량 및 디자인이 상이하오니 사전에 확인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실시공시 단열재 설치 등에 따라 크기 및 면적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생활환경(관상용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 내부에 자연환기량 감소 및 습도 증가시 결로현상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관리 및 주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기본형(비확장형), 확장형의 창호 사양은 발코니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의 발코니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람. • 모든 창호의 형태 및 재질, 색상, 크기, 개폐방향, 위치, 유리사양, 창호분할수 등은 현장 여건 및 미관, 내풍압, 에너지효율 등을 고려하여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외부창호 및 계단실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결과에 따라 층별, 세대별로 다르게 시공될 수 있음.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및 대피공간에는 배수구 및 배수용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으며, 발코니에 설치되는 배수구 및 배수용 드레인 및 오수관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우 · 오수 선홈통의 위치 및 개수는 현장 여건에 따라 실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실 거주시 우 · 오수 선홈통 및 급수관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인지 후 계약하시기 바람.
• 계약자가 기존 사용하고 있거나,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바람.
• 각 세대의 내부에 설치되는 주방가구(상,하부장), 신발장, 화장대, 붙박이장, 욕실장 등 설치되는 가구의 상하부, 측후면 등 비노출면에는 마루, 타일, 도배지 등의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으며, 가구 및 주방가구 하부 바닥은 난방코일이 시공되지 않음. • 현관방화문 하부 스토퍼(말발굽)는 미 시공됨. • 97T Type이상 설치되는 주방벽체 인조대리석은 유지관리를 위해 분할시공되며 연결부위는 줄눈처리됨.
• 대피공간 및 실외기실은 도어클로저가 설치되지 않음. • 플라스틱창호는 구조상 흔들림이 발생할 수 있음. • 실+실 칸막이(옵션 선택시 스위치 및 온도조절기는 사업승인도면 기준으로 시공됨.
• 발코니 배수구의 위치는 현장 여건에 따라 실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사시 천장틀의 종류 및 규격은 천장구성 및 마감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각 세대에 설치되는 대피공간은 화재 시 외부로의 대피를 위한 공간으로 출입문은 방화문이 설치되며, 입주 후에도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재질을 변경할 수 없으며 대피공간의 방화문에는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각 타입 신발장 및 현관장고 내부에 세대분전반 및 통신단자함 공간이 노출 설치되며, 점검시 선반 탈부착, 이동 등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본 공사시 세대 발코니의 유효길이 및 높이 등은 해당 세대의 층수, 위치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견본주택내 실외기실에 설치된 그릴 및 창호의 제조사, 업체, 규격, 사양, 하드웨어류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동일한 주택형이라도 세대가 속한 동 및 라인에 따라 세대입구 공용부분 및 서비스면적 등이 상이할 수 있으니,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람.(면적 증감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세대 타입별로 벽체의 길이에 따라 포인트벽지가 시공되지 않는 부위가 있을 수 있음. • 유상옵션품목 및 선택옵션품목에 대한 선택은 확장형 선택시에만 선택 가능함.
• 아파트 입면이 페인트 기본마감에 금속판넬이 설치될 경우, 금속판넬은 건물 외벽에 돌출되어 시공되므로, 시각적으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우천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으니 인지 후 계약하시기 바람.
• 세대별 층간소음재의 경우 법적인 기준을 만족하는 조건으로 설치되며, 외부환경에 따른 개인별 소음차로 인한 추가변경는 불가능하오니 인지 후 계약하시기 바람.
• 세대내 칸막이벽체의 경우 경량벽체로 설치되는 구간이 있으며, 실+실간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위세대 입면에 따라 창호의 크기가 다를 수 있음.
• 테라스세대의 테라스와 세대 경계부에는 바닥난방 등을 위한 골조턱이 형성되어 테라스 바닥면과 단차이가 발생하게되며 테라스 진입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전 세대 기둥, 보, 월거더 등 구조체가 실내, 벽부 또는 천장에 노출되어 시공되며, 노출시 벽지구간 이외에는 도장으로 마감되오니 이를 인지하고 계약에 임하시기 바람.
• 복층형 난간대는 본 공사시 모형 및 이미지와 다를 수 있음. • 안방, 침실1과 침실2의 포인트 벽지는 세대별 시공부위가 없을 수 있음. • 확장시 세탁실 수납장은 세대에 따라 공간구조상 설치되지 않는 세대가 있을 수 있음.
• 일부 설비소방 시설의 위치도 변경될 수 있음. • 세대의 거실, 침실 등의 상부가 비확장 발코니 또는 테라스인 경우, 단열재가 세대내부에 설치되어 커텐박스의 깊이가 기준층보다 낮게 설치됨.
• 부부욕실은 반건식 공간으로 배수구가 없으며, 바닥타일은 경사 없이 수평으로 시공됨. (샤워부스내부는 경사 및 배수구 설치 됨) • 전 주택형은 전실이 제공되지 않으며, 입주 후에도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할 수 없음.
• 준공전 · 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 · 외부,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전 · 후 최종 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 행복도시 택지지구 또는 그 외 타지역의 타사 또는 당사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등을 본 아파트와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람.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일부 세대는 공사 중에 고품질 시공을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해당 세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 본건 공급대상 주택에 대한 설계 및 시공은 분양계약체결 이후 내장 및 외장 재료의 수급 여건, 현장 시공 여건, 입주자의 편의성 제고, 관련 법규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수분양자에 대한 사전 통보 없이 불가피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서 주택법 등 관련 법령상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승인 · 통보 등 절차를 거치고 그 변경으로 인하여 기능적 · 객관적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수분양자는 위 변경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름.

■ 동별 주요 고지사항

구 분	내 용
각동 공통사항	– 주상복합 아파트 특성상 배치 위치에 따라 일조량이 상이하며, 타워형 주동은 판상형 주동의 아파트에 비해 주거환경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단지외곽 도로 및 보행자도로에 면하는 세대는 차량 소음, 분진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음. – 단지내 비상차로 및 지하주차장 출입구(경사로), 주민운동시설, 어린이(유아)놀이터, 수경시설, 단지내 보행로, 근린생활시설, 인접 수변공원 등에 인접한 세대는 사생활간섭, 소음, 분진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음. – 단지내 배치 구조상 이사집차량 진입이 불가하여 사다리차를 이용할 수 없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할 수 있음. – 주동 인근에 설치되는 자전거보관대, 쓰레기 보관소, Dry Area, 선큰 등이 설치되어 냄새, 소음 등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주동의 위치에 따라 동일 타입인 경우에도 발코니에 설치된 대피공간, 실외기실의 위치가 상이하므로 모델하우스, 도면 등에서 확인하여야 함. – 동일 타입인 경우에도 층수 위치에 따라 오픈발코니가 설치되지 않는 타입이 있으며, 이 경우는 기준층의 창호와 다르게 오픈발코니진입이 가능한 창호로 변경 설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각 동의 테라스가 제공되는 세대의 테라스 바닥 마감은 콘크리트 쇠흙손으로 마감되오니 이를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람. – 각 동에 설치되는 테라스의 상하좌우에 면하는 거실은 냉난방효율이 떨어질수 있으며, 테라스와 접하는 하부층의 거실은 단열재 설치로 인하여 커텐박스의 깊이가 축소 설치될 수 있음. – 단위세대 입면에 따라 창호 크기 등이 달라질 수가 있음. – 단위세대 기둥 등 구조에 따라 대피공간 등 일부실이 다르니 필히 도면을 확인 하시기 바람. – 각동의 피로티는 위치별로 피로티의 높이 및 천장고가 상이하며, 내부의 구조체 및 기둥, 벽체 등은 외부용 수성도장, 또는 뿜칠 등으로 마감되고, 피로티 바닥 마감재는 1, 2층인 경우 블록, 3층인 경우 콘크리트 쇠흙손으로 마감됨. – 301~309동은 지상1~지상5층은 주거용 엘리베이터 및 계단실 이외에 행정중심복합도시 2-4생활권 지구단위계획지침에 의거하여 건강계단이 추가적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이는 공용 및 부대시설 면적에 산입되어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건강계단은 다수 층이 바닥 슬라브없이 오픈되는 구간이 있어, 울림현상 등으로 소음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일부 타입의 경우 주동의 형태상 엘리베이터와 현관의 거리가 다소 떨어져 있어 이동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와 현관문 사이(전실) 일부에 설치되는 조경, 복도, 홀, 발코니 등의 공간은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로 구조변경이 금지되며, 공용부위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동별 · 타입별로 면적의 차이가 있음. – 당 주상복합 아파트의 입면 마감재는 금속판넬 및 실리콘페인트를 기본으로 하며, 저층부 일부는 테라판넬 등이 일부 설치될 예정이며, 주동 출입구 일부에 석재가 적용될 예정이며, 분양후 실시설계시 일부 디자인, 색채, 마감재의 종류 등이 변경될 수 있음.
301동	– 3, 5호 라인 쓰레기 투입구(자동크린넷) 및 재활용분리수거소가 설치되어, 일부 저층부는 해당 시설의 소음, 냄새 등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하부 상가시설 설치되며(상가 실외기실,공조기,냉각탑등), 일부 저층부는 해당 시설의 소음, 냄새 등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3, 4호 라인 동향면으로 접한 단지내 보행통로,이용객 등에 의한 소음 등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1, 2호 서향면으로 냉각탑이 설치되며, 냉각탑의 소음/진동/백연 등으로 인하여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냉각탑까지 최단 이격거리는 약 30m이며, 공조기는 약 17m임 – 1, 2호 지상 ,지하층 동출입구는 길수도 있습니다. 또한 근처에 DA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 배면에 옥외 시설이 계획되어 있어 일부 저층부는 해당 시설의 소음, 냄새 등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10, 11층에 주민 공동시설이 계획되어 있어 근처 층에는 해당 시설의 소음, 냄새 등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10, 11층에 무동력휀이 계획되어 있어 근처층에 해당 시설의 소음, 냄새 등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302동	– 2, 3호 라인 전면으로 쓰레기 투입구(자동크린넷) 및 재활용분리수거소가 설치되어, 일부 저층부는 소음, 냄새 등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1, 2호 라인 하부 상가시설 설치되며(상가 실외기실,공조기,냉각탑등), 일부 저층부는 해당 시설의 소음, 냄새 등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2, 3호 주채광방향으로 근린생활시설 및 공개공지가 설치되며, 일부 저층부는 소음 등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2, 3호 1층 경로당 등, 2층 게스트 하우스 계획으로 일부 저층부는 소음, 냄새 등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31, 32층 주민 공동시설이 계획되어 있어 근처 층에는 해당 시설의 소음, 냄새 등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1, 2호 서향면으로 냉각탑이 설치되며, 냉각탑의 소음/진동/백연 등으로 인하여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냉각탑까지 최단 이격거리는 약 14m이며, 공조기는 약 7m임 – 전,후면에 옥외 시설이 계획되어 있어 일부 저층부는 해당 시설의 소음, 냄새 등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저층부분에 무동력휀이 계획되어 있어 근처층에 해당 시설의 소음, 냄새 등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3호 세대 동측으로 단지내 보행통로가 계획되어 있어 소음, 냄새 등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저층부에 DA등이 계획되어 있음.
303동	– 3, 5호 라인 쓰레기 투입구(자동크린넷) 및 재활용분리수거소가 설치되어,일부 저층부는 해당 시설의 소음, 냄새 등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하부 상가시설 설치되며(상가 실외기실,공조기,냉각탑등), 일부 저층부는 해당 시설의 소음, 냄새 등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1, 2, 3, 4호 라인 배면, 동향면으로 접한 단지내 보행통로 및 공공보행통로, 이용객 등에 의한 소음 등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1, 2호 서향면으로 냉각탑이 설치되며, 냉각탑의 소음/진동/백연 등으로 인하여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냉각탑까지 최단 이격거리는 약 38m이며, 공조기는 약 8m임. – 1, 2호 지상 ,지하층 동출입구는 길수도 있습니다. 또한 근처에 da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 전후에 옥외 시설이 계획되어 있어 일부 저층부는 해당 시설의 소음, 냄새 등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10, 11층에 주민 공동시설이 계획되어 있어 근처 층에는 해당 시설의 소음, 냄새 등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10, 11층에 무동력휀이 계획되어 있어 근처층에 해당 시설의 소음, 냄새 등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304동	– 2, 3호 라인 전면으로 쓰레기 투입구(자동크린넷) 및 재활용분리수거소가 설치되어, 일부 저층부는 소음, 냄새 등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1, 2호 라인 하부 상가시설 설치되며(상가 실외기실, 공조기, 냉각탑등), 일부 저층부는 해당 시설의 소음, 냄새 등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2, 3호 주채광방향으로 근린생활시설 및 공개공지가 설치되며, 일부 저층부는 소음 등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2, 3호 지하1층 썬큰, 주민공동시설, 1층 작은도서관, 2층 주민공동시설계획으로 일부 저층부는 소음, 냄새 등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31, 32층 주민 공동시설이 계획되어 있어 근처 층에는 해당 시설의 소음, 냄새 등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1, 2호 서향면으로 냉각탑이 설치되며, 냉각탑의 소음/진동/백연 등으로 인하여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냉각탑까지 최단 이격거리는 약 23m이며, 공조기는 약 14m임 – 전, 후면에 옥외 시설이 계획되어 있어 일부 저층부는 해당 시설의 소음, 냄새 등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저층부분에 무동력휀이 계획되어 있어 근처층에 해당 시설의 소음, 냄새 등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3호 세대 동측으로 단지내 보행통로가 계획되어 있어 소음, 냄새 등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저층부에 DA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 주동출입구 사이로 필로티로 계획되어 있어 소음등이 발생할 수 있음.
305동	– 3, 5호 라인 쓰레기 투입구(자동크린넷) 및 재활용분리수거소가 설치되어,일부 저층부는 해당 시설의 소음, 냄새 등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하부 상가시설 설치되며(상가 실외기실,공조기,냉각탑등), 일부 저층부는 해당 시설의 소음, 냄새 등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3, 4호로 접한 단지내 보행통로,이용객 등에 의한 소음 등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1, 2호 서향면으로 냉각탑이 설치되며, 냉각탑의 소음/진동/백연 등으로 인하여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냉각탑까지 최단 이격거리는 약 30m이며, 공조기는 약 21m임. – 1, 2호 지상 ,지하층 동출입구는 길수도 있습니다. 또한 근처에 DA등이 계획되어 있음. – 전후면에 옥외 시설이 계획되어 있어 일부 저층부는 해당 시설의 소음, 냄새 등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10, 11층에 주민 공동시설이 계획되어 있어 인접 세대에는 해당 시설의 소음, 냄새 등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10, 11층에 무동력휀이 계획되어 있어 인접 세대에 해당 시설의 소음, 냄새 등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2, 3호세대 하부에 근린 생활시설 주차장 출입구가 있어 빛, 소음, 냄새 등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저층부 출입구 옆에 DA 및 동출입구에 인접해있어 빛, 소음, 냄새 등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지하층에 동출입구가 길어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306동	– 6, 7호 라인 쓰레기 투입구(자동크린넷) 및 재활용분리수거소가 설치되어, 일부 저층부는 해당 시설의 소음, 냄새 등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동후면,동측에 공개공지가 계획되어 있어 일부 저층부는 해당 시설의 소음, 냄새 등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1, 2호로 접한 단지내 보행통로, 이용객 등에 의한 소음 등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전면에 옥외 시설이 계획되어 있어 일부 저층부는 해당 시설의 소음, 냄새 등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13, 14층에 필로티가 계획되어 있어 근처 층에는 해당 시설의 소음, 냄새 등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저층에 무동력휀이 계획되어 있어 근처층에 해당 시설의 소음, 냄새 등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1, 2호세대 동 편에 주차장 출입구가 있어 하부에 일부세대에 빛, 소음, 냄새 등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저층부 출입구 옆에 DA 및 동출입구에 인접해있어 빛, 소음, 냄새 등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저층부에 필로티 인접 세대는 빛, 소음,냄새등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307동	– 3, 5, 6호 라인 쓰레기 투입구(자동크린넷) 및 재활용분리수거소가 설치되어, 일부 저층부는 해당 시설의 소음, 냄새 등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동측에 공개공지가 계획되어 있어 일부 저층부는 해당 시설의 소음, 냄새 등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1, 2호로 접한 단지내 보행통로,이용객 등에 의한 소음 등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세대 전면에 공공보행통로 계획되어 있어 이용객 등에 의한 소음 등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5, 6호 세대 전면으로 입체 보행통로 계획으로 이용객 등에 의한 소음 등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전면에 옥외 시설이 계획되어 있어 일부 저층부는 해당 시설의 소음, 냄새 등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5, 6호 지하1층 사우나, 1층 헬스장, 2층 골프연습장등계획으로 일부 저층부는 소음, 냄새 등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31, 32층 주민 공동시설이 계획되어 있어 근처 층에는 해당 시설의 소음, 냄새 등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저층에 무동력휀이 계획되어 있어 근처층에 해당 시설의 소음, 냄새 등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1, 2호세대 동 편에 주차장 출입구가 있어 하부에 일부세대에 빛, 소음,냄새 등의 불편함이 있을수 있음 – 저층부 출입구 옆에 DA 및 동출입구에 인접해있어 빛, 소음,냄새 등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저층부에 필로티 인접 세대는 빛, 소음, 냄새 등의 불편함이 있을수 있음 – 1, 2호 세대 7층~18층까지 5, 6호 세대와 인접해있어 빛, 소음, 냄새 등의 불편함이 있을수 있음. – 저층세대에 무동력휀이 계획되어 있어 인접 세대에 해당 시설의 소음, 냄새 등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308동	– 3, 5호 라인 쓰레기 투입구(자동크린넷) 및 재활용분리수거소가 설치되어,일부 저층부는 해당 시설의 소음, 냄새 등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동측에 공개공지가 계획되어 있어 일부 저층부는 해당 시설의 소음, 냄새 등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1, 2호로 접한 단지내 보행통로, 이용객 등에 의한 소음 등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세대 후면에 공공보행통로 계획되어 있어 이용객 등에 의한 소음 등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5, 6호 세대 전면으로 입체 보행통로 계획으로 이용객 등에 의한 소음 등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전면에 옥외 시설이 계획되어 있어 일부 저층부는 해당 시설의 소음, 냄새 등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5, 6호 1층 어린이집계획으로 일부 저층부는 소음, 냄새 등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31, 32층 주민 공동시설이 계획되어 있어 근처 층에는 해당 시설의 소음, 냄새 등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저층에 무동력휀이 계획되어 있어 근처층에 해당 시설의 소음, 냄새 등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1, 2호 세대 동 편에 주차장 출입구가 있어 하부에 일부세대에 빛, 소음, 냄새 등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저층부 출입구 옆에 DA 및 동출입구에 인접해있어 빛, 소음, 냄새 등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저층부에 필로티 인접 세대는 빛, 소음, 냄새 등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1, 2호 세대 7층~18층까지 5, 6호세대와 인접해 있어 빛, 소음, 냄새 등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저층세대에 무동력휀이 계획되어 있어 인접세대에 해당 시설의 소음, 냄새 등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309동	– 하부 상가시설 설치되며(상가 실외기실, 공조기, 냉각탑 등), 일부 저층부는 해당 시설의 소음, 냄새 등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5, 6호 라인 쓰레기 투입구(자동크린넷) 및 재활용분리수거소가 설치되어, 일부 저층부는 해당 시설의 소음, 냄새 등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동후면, 동측에 공개공지가 계획되어 있어 일부 저층부는 해당 시설의 소음, 냄새 등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1, 2호로 접한 단지내 보행통로, 이용객 등에 의한 소음 등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전면에 옥외 시설이 계획되어 있어 일부 저층부는 해당 시설의 소음, 냄새 등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13, 14층에 필로티가 계획되어 있어 인접세대에는 해당 시설의 소음, 냄새 등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저층에 무동력휀이 계획되어 있어 인접세대에 해당 시설의 소음, 냄새 등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1, 2호세대 동 편에 주차장 출입구가 있어 하부에 일부세대에 빛, 소음, 냄새 등의 불편함이 있을수 있음 – 저층부 출입구 옆에 DA 및 동출입구에 인접해있어 빛, 소음, 냄새 등의 불편함이 있을수 있음 – 1호세대 필로티로 주보행자가 다녀 빛, 소음, 냄새 등의 불편함이 있을수 있음

■ 세대/규격
• 분양 시 홍보물에 표시된 평면도(치수, 구획선), 실내투시도(색상, 구획선), 단지배치도, 면적 및 도면내용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 시 다소 변경 될 수 있음

■ 제공/전시품목
• 분양 시 홍보물 및 실내투시도에 표시된 가전제품 및 인테리어소품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계약시 포함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든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와 스프링클러는 견본주택용 소방시설임
• 견본주택에 설치된 보조조명, 커튼, 소파, 거실장, 거실 테이블, 침대, 책상 등의 이동식 가구, 디스플레이 가전(빌트인냉장고, TV, 세탁기, 김치냉장고 등), 액자 및 소품은 세대 연출을 위한 것으로 본 공사 시 시공에서 제외됨.

Ⅸ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분양가격 공시 및 친환경주택 성능 수준표시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3항제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함.(「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에 적용)

구분			내용	비고
고기밀 창호			적용	2등급 이상 기밀성창호 설치
의무사항 이행 여부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변압기	적용	전동기, 펌프, 변압기
		전동기	적용	
		펌프	적용	
		보일러	해당없음	
	대기전력 차단장치		적용	세대 내 대기전력차단스위치 설치
	일괄소등 스위치		적용	세대 내 일괄소등스위치 설치
	고효율 조명기구		적용	세대 및 공용부위 고효율기자재 및 동등성능 이상 제품 적용
	부대시설화장실 자동점멸 스위치		적용	부대시설화장실 내 재실감지센서 설치
	세대별 온수 조절장치		적용	각 실별 자동온수조절장치 설치
	절수기기		적용	세대 내 설치 수전류는 절수형 설비 적용

▣ 인증서
■ 공동주택성능등급인증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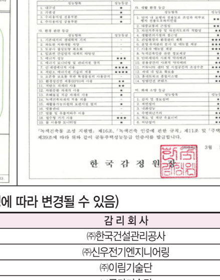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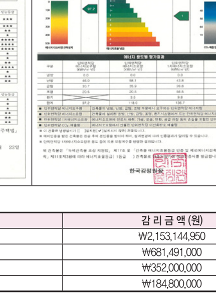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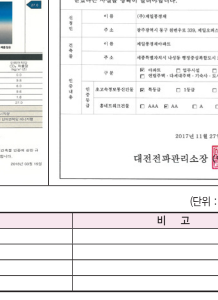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감리금액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단위 : 원 / VAT포함)

구 분	감 리 회 사	감 리 금 액 (원)	비 고
건 축	㈜한국건설관리공사	₩2,153,144,950	
전 기	㈜신우전기엔지니어링	₩681,491,000	
소 방	㈜이림기술단	₩352,000,000	
통 신	㈜금라기술단	₩184,800,000	

▣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 「주택법」제57조제1항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제15조에 따라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공시항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개함.
• 아래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으며, 추후라도 이는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항 목	공 종	금 액(원)	비 고
택지비	택지공급가격	54,147,000,000	
	기간이자	1,035,093,823	
	그 밖의 비용	4,969,962,818	
계		60,152,056,641	
공사비	토목	24,818,241,000	
	건축	62,480,388,000	
	기계설비	10,762,845,000	
	그 밖의 공종	21,525,689,000	
	그 밖의 공사비	12,127,351,000	
계		131,714,514,000	
간접비	설계비	3,856,834,000	
	감리비	3,371,435,950	
	부대비	75,318,519,674	
계		82,546,789,624	
그 밖의 비용		25,589,539,735	
합 계		300,002,900,000	

▣ 분양보증내용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보증서 번호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 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180,001,740,000원	제 05612018-101-0002600호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중 보증사고 · 보증기간, 보증채무의 내용 및 보증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 보증사고(보증약관 제4조)
① "보증사고"라 함은 보증기간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함.
1. 주채무자에게 부도 · 파산 · 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25퍼센트P 이상 미달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요하지 아니함.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 · 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당해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한다)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까지를 말함
② 보증사고일은 보증회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을 통지하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함. 이 경우 보증회사는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한다)에 게재함으로써 통보에 갈음할 수 있음. 이하 같음.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 · 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접수일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보증채무의 내용(보증약관 제1조)
보증회사는 「주택도시기금법시행령」제21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함.
【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함.
【주채무자】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주체를 말함.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당해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 완료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등의 납부(보증약관 제2조)
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허위계약,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서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함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대여하여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함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함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 · 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함.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 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함.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새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기타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함.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1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 · 공동사업주체 · 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대여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 보증회사가 제6조에 의한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러하지 아니함.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한다)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보증회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에 한하여 보증채권자로 봄.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함.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회 사 명	주 소	비고(등록번호)
사업주체	(주)제일풍경채	광주광역시 동구 천변우로 339(수기동, 수기동제일오피스텔 1805호)	200111-0001895
시공사	제일건설(주)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중앙로 78, 가동 2층	135811-0093658

▣ 견본주택 사이버모델하우스 : www.sejong-jeil.co.kr
▣ 견본주택 위치 :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 264-1번지 일원 / 분양문의 1588-1219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및 공급회사로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람.(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함)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아파트 84㎡~158㎡ 총 771세대 | 상업시설 197호실 |

문의 **1588.1219**

시행 (주)제일풍경채 시공 SINCE 1978 제일건설(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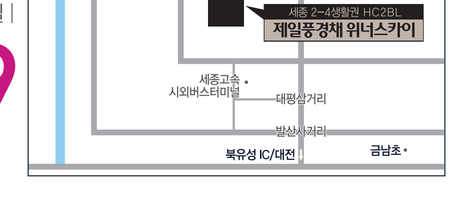
모델하우스 세종특별자치시 대평동 264-1